

관세연구 24-04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및 관세정책 현황

2024. 12.

홍병진·나지수

연 구 진

연구총괄

홍 병 진 부연구위원

연구자

나 지 수 특수전문직 3급(관세사)

목 차

I. 서론	1
II. 미국의 주요 관세정책	5
1. 미국의 일반적인 관세정책	5
2.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세정책	9
가. 주요 관세정책의 역사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9
나. 미국 관세정책 관련 조사 및 관리	15
III. 미국 관세정책의 근거법 규정	17
1. 미 행정부에 위임된 관세 권한	17
가. 대통령에 대한 관세 권한 위임의 근거 조항	17
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	19
2. 주요 관세정책의 근거법 규정	22
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	22
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24
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슈퍼 제301조	26
라.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32
IV.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36
1.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	36
가. 트럼프 관세	36
나. 미·중 무역 전쟁	41

다. 무역구제조치 규정 강화	52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53
가. 상호 관세 부과	56
나.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58
다. 주요국에 대한 관세정책	66
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정책	74
V. 결론 및 시사점	83
참고문헌	92

표 목차

〈표 II-1〉 최근 10년간 미국의 소비재 수입 과세가격	6
〈표 II-2〉 최근 미국의 특혜세율에 따른 수입 과세가격(1)	8
〈표 II-3〉 최근 미국의 특혜세율에 따른 수입 과세가격(2)	8
〈표 II-4〉 미국 관세 역사에서의 주요 정책	14
〈표 II-5〉 미국 관세정책 관련 기관	15
〈표 III-1〉 대통령의 권한 위임의 조건	19
〈표 III-2〉 미국 대통령 직권 관세 인상의 근거 및 사례	21
〈표 III-3〉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관련 근거법 정리	35
〈표 IV-1〉 트럼프 1기 주요 관세 전쟁의 타임라인	37
〈표 IV-2〉 제232조 국가별 예외 조치 운영 현황	39
〈표 IV-3〉 미국의 태양광 제품 및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41
〈표 IV-4〉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1980~2017)	42
〈표 IV-5〉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과정	44
〈표 IV-6〉 제301조 대중국 수입 물품의 관세 인상	47
〈표 IV-7〉 주요 교역상대국별 미국 수입액의 백분율 변화	50
〈표 IV-8〉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정책 과제 내용	54
〈표 IV-9〉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대상 품목 리스트	61
〈표 IV-10〉 보편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영향	65
〈표 IV-11〉 2024년 미국의 10대 수입국 및 적자국	76
〈표 IV-12〉 최근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	77
〈표 IV-13〉 승용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표	79
〈표 IV-14〉 트럼프 관세 2.0의 타임라인	82
〈표 V-1〉 트럼프 1기와 2기의 관세정책 비교	83

그림 목차

[그림 II-1] 미국의 평균 관세율(1821~2023)	10
[그림 IV-1] 2017년 미국 주요국의 무역 불균형	43
[그림 IV-2]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관세의 변화	48
[그림 IV-3] 미국 내 중국 수입 점유율의 변화	49
[그림 IV-4] 대중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수입 비중 변화	50
[그림 IV-5] 무역 전쟁으로 부과된 관세	51
[그림 IV-6] 미국의 신규 수입 규제 개시 건수 추이	52
[그림 IV-7] 보편 관세 부과 시 미국의 타격 예상 수입 품목	66
[그림 IV-8] 상대국의 보복 조치 시 미국의 타격 예상 수출 품목	66

I. 서론¹⁾

- 최근 세계 무역은 대내외적 불확실성과 지속적인 인플레이션 등 예기치 못한 도전과 극심한 변화를 겪으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코로나19 팬데믹,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등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 및 원자재 부족, 에너지 가격의 급등은 세계 경제를 위축시킴
 -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등 무역 협정이 발효되면서 지역별 경제협력이 확대되는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일부 국가들이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활용하는 등 보호무역주의도 강화됨에 따라 무역 불균형은 악화됨

- 이러한 불안정한 무역 환경 속에서 미국의 관세정책은 세계 무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관세 인상 정책은 소비자재와 자본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와 기업의 구매력을 감소시키는 한편 물가는 인상되어 인플레이션을 심화²⁾시키고, 인플레이션 악화는 금리 인상의 압력으로까지 이어짐
 - 특히 패권 국가인 미국의 관세 인상은 전 세계의 무역량 감소 등으로 이어져 GDP가 감소³⁾하고 경제성장을 둔화시키며, 달러화 가치를 올려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의

1) 본 연구는 2025년 3월 20일까지 발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하였음

2)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10%)가 부과될 경우 2026년 인플레이션은 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CBO, "Effects of Illustrative Policies That Would Increase Tariffs", December 18, 2024,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12/61112-Tariffs.pdf>, 검색일자: 2025. 02. 05.)

3) 미 의회예산국은 트럼프 관세 조치가 없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 향후 10년간 GDP는 1,650억달러 축소할 것으로 전망함(상동)

통화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음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기 행정부 당시(2017~2020년) 미국의 경제적, 정치적, 안보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략인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시행함
 - 무역정책에서는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고 공정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고율 관세를 부과함
 - 반면 미국 내 경제정책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세금 감면과 규제 완화를 시행하여 해외로 이전한 기업들의 리쇼어링을 유도하고, 해외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 시킴
 - 또한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는 미국의 직접적 이익을 중심으로 국제기구에서 탈퇴하거나 불법 이민을 엄격히 단속하고 국경 보안을 강화하는 등의 강경 정책을 지향함
 - 이에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글로벌 무역 환경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으며, 무역 전쟁으로까지 확산되었음

- 바이든 행정부(2021~2024년)는 기존의 관세정책을 상당 부분 유지하면서도 동맹국과의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며 다소 완화하는 듯하였으나 여전히 예측 불가능한 상태였으며, 말기에는 트럼프 정권의 재집권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강화하였음

- 4년 만에 재입성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2025~2028년)는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표명함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 2.0’의 강력한 보호무역 원칙을 기조로 관세 무기화를 통한 무역정책 전반의 개혁을 예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관세는 사전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언급하며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기업의 미국 유입 가능성이 커지며, 보편 관세 10%만 부과해도 연방 부채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함⁴⁾

- 대선 공약인 ‘Agenda 47’을 통해 고율 관세 부과 및 「상호무역법(Reciprocal Trade Act)」 제정을 발표함
 - 또한 1월 20일 취임 연설에서 “무역 시스템을 즉시 개편할 것이며 우리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대신 외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언함⁵⁾
 - 취임 직후에는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각서와 행정 명령 등에 서명함
- 미국의 관세정책과 이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 속에서 한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미래의 무역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함
- 미국의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한국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트럼프는 취임 직후 미국의 3대 교역국이자 미국 상품 무역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해 고율 관세 부과 조치를 단행함
 - 한국은 2024년 기준 미국의 여덟 번째 무역 적자국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의 다음 타겟이 될 수 있음
 - 또한 중국이 미국의 고율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대미 수출을 다른 국가로 전환하면서 저가 수출 공세에 나설 우려도 있음
 - 특히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관세정책은 여러모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세정책 이슈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트럼프 2기를 포함한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4) 2024년 10월 시카고 이코노믹 클럽 인터뷰에서 “Tariff is the most beautiful word in the dictionary”라고 말하며 다시 한번 보편 관세 부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함

5) 취임 연설 원문은 다음과 같음 “I will immediately begin the overhaul of our trade system to protect American workers and families. Instead of taxing our citizens to enrich other countries, we will tariff and tax foreign countries to enrich our citizens.” (The White House, January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5/01/the-inaugural-address/>, 검색일자: 2025. 01. 22.)

- 본 연구는 미국의 역사적인 주요 관세정책과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고, 관세정책의 동향을 파악하여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비하기 위한 자료로 의의가 있음

- 본 연구는 제I장 서론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음
 - 제II장에서는 미국의 관세 현황과 역사적 주요 관세정책을 바탕으로 미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에 대해 살펴봄
 - 제III장에서는 관세 부과와 관련된 법률적 근거(1930년 「관세법」, 1962년 「무역확장법」, 1974년 「무역법」 등)를 정리함으로써 미국의 주요 관세정책을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함
 - 제IV장에서는 최근(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2기 행정부까지) 미국 관세정책의 이슈와 주요 국가의 대응 방안을 분석함
 - 제V장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한국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II. 미국의 주요 관세정책

1. 미국의 일반적인 관세정책

- 관세는 전통적으로 국가 재정수입의 확보를 위해 부과되었으나, 점차 그 역할이 확대되어 오늘날에는 무역 협상 및 대외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됨
 - 미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관세는 19세기 말까지 주요 수입의 원천이었으나 오늘날에는 국가의 수입이 다른 세금으로 충당되면서, 관세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외교 정책 목표를 진전시키거나 무역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됨⁶⁾
 - 미국은 또한 자유 무역 질서를 추구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회원국으로 오랜 시간 여러 무역 협정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협정에는 관세와 관련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

-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인 무역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는 글로벌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고 외교 목표를 추구하기 위하여 관세정책을 활용함
 - 지난 70년 동안 미국의 관세는 연방 수입의 2% 이하의 비중을 차지함⁷⁾
 - 2024년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770억달러의 관세를 징수했으며, 이는 총연방수입의 약 1.6%에 해당함
 - 현재 미국은 산업(비농업) 상품에 대한 가중평균관세율⁸⁾을 2%로 책정하고 있으며,

6)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U.S. Tariff Policy: Overview*, December 19, 2024,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030>, 검색일자: 2025. 01. 09.

7) CRS(2024), p. 2

8) 가중평균관세란 특정 국가에서 수출입되는 다양한 상품에 대한 관세를 무역가중치에 따라 평균하여 계산한 값(외교통상용어사전, <http://www.korea.go.kr/>, 검색일자: 2025. 01. 09.)

산업 상품 수입의 절반 이상이 무관세로 수입되고 있음⁹⁾

- 2021년 미국의 최혜국 대우(Most Favored Nation, MFN) 관세는 가중 평균 기준으로 2.34%였으며, 일반특혜관세제도(GSP) 및 기타 관세 혜택과 제232조 및 제301조 조치에 따른 관세를 포함한 일반 관세율도 가중 평균 기준 3%였음¹⁰⁾
 - 주요 5개 교역상대국¹¹⁾의 평균 적용 관세는 4.0%에서 7.5%까지로 다양함

□ 미국은 면세 수입액의 비율이 과세 수입액의 비율보다 전반적으로 높으며, 총수입액에서 부과된 관세액이 차지하는 비율(평균 종가관세)은 3% 이하임

- 트럼프 1기 정부 집권 초기인 2017년부터 2018년까지 과세 수입액에서 부과된 관세액의 비율은 6% 미만, 총수입액에서 부과된 관세액의 비율은 2% 미만이었으나, 고율 관세정책을 시행한 이후인 2019년부터 각 비율은 소폭 증가함
 - 특히 트럼프 관세정책 직후인 2019년에는 과세 수입액에 대한 부과 관세의 비율은 7.8%, 총수입액에 대한 비율은 2.6%로 급격히 증가함
- 바이든 정부 시기의 평균 종가관세는 2.4~3.0%를 나타내면서 트럼프의 관세정책 이후의 비율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표 II-1〉 최근 10년간 미국의 소비재 수입 과세가격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소비재 ¹⁾ 수입 (과세가격)					비율(%)		
	면세 수입액	비율	과세 수입액	비율	총수입액	부과 관세액	부과 관세/과세 수입	부과 관세/총수입액 ²⁾
2014	1,600,000	68.6	724,940	31.2	2,324,940	32,493	4.5	1.4
2015	1,533,130	68.6	694,107	31.2	2,227,237	33,850	4.9	1.5
2016	1,525,420	70.2	646,762	29.8	2,172,183	32,231	4.0	1.5
2017	1,620,855	69.6	706,298	30.4	2,327,153	32,941	4.7	1.4
2018	1,713,725	67.3	834,061	32.7	2,547,787	46,420	5.6	1.8

9) USTR, "Industrial Tariffs", <https://ustr.gov/issue-areas/industry-manufacturing/industrial-tariffs>, 검색일자: 2025. 02. 05.

10) WTO, *Trade Policy Review*, WT/TPR/G/434, 2022, p. 5.

11) 2021년 기준 EU, 캐나다, 멕시코, 중국, 일본임

〈표 II-1〉의 계속

(단위: 백만달러, %)

연도	소비재 ¹⁾ 수입 (과세가격)					비율(%)		
	면세 수입액	비율	과세 수입액	비율	총수입액	부과 관세액	부과 관세/과세 수입	부과 관세/총수입액 ²⁾
2019	1,650,770	66.1	844,917	33.9	2,495,687	66,118	7.8	2.6
2020	1,605,330	68.9	725,225	31.1	2,330,555	64,365	8.9	2.8
2021	1,877,278	66.6	940,963	33.4	2,818,241	83,439	8.9	3.0
2022	2,128,557	66.0	1,097,758	34.0	3,226,315	90,101	8.2	2.8
2023	2,096,914	68.2	979,666	31.8	3,076,581	72,464	7.4	2.4

주: 1) 소비재 수입(Imports for consumption)은 소비로 수입되는 경우(2022년 기준 약 수입품의 90% 이내) 또는 보세창고 및 자유무역지역 보관 후 소비로 반입되는 경우(2022년 기준 약 수입품의 10% 이내)를 포함하므로 관세율, FTA 등을 분석할 때 가장 적합한 기준임. 단, 미국 내 일부 자유무역지역에서의 제조 등으로 반드시 물품이 실제로 미국에 도착한 상태나 출발지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함

2) 부과된 관세와 총수입액의 비율(평균 종가관세 상당액(average ad valorem equivalent))은 한 국가의 관세 장벽이나 수입에 대한 관세의 제한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전체 관세율표에 대한 비율은 면세 또는 저세율 적용 수입에는 영향을 받으나, 고세율 적용 수입에는 영향을 덜 미치며 수입 금지품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또한 부과된 관세의 비율에서 상승/하락은 적용된 세율의 변화, 연도별 수입 구성의 변화, 수입된 상품의 가격 변화 등을 반영할 수 있음

자료: USITC, U.S. *Ad Valorem Equivalent(AVE) Duties & Preference Programs, 1981-2023*, 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Office of Operations,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24, p. 7.

- 또한 미국은 현재 20개국과 14개의 RTA(지역자유무역협정)를 체결·발효 중임
- 미국은 RTA 이외에도 GSP, CBERA, AGOA 등의 협정으로 교역상대국의 특정 품목에 특혜세율을 부과함

〈표 II-2〉 최근 미국의 특혜세율에 따른 수입 과세가격(1)

(단위: 백만달러)

연도	GSP ¹⁾	CBERA/ CBTPA ²⁾	이스라엘 FTA	NAFTA ³⁾	AGOA ⁴⁾	요르단 FTA	칠레 FTA	싱가포르 FTA	호주 FTA
2014	18,808	1,973	2,952	356,962	11,874	1,217	4,940	1,568	4,701
2015	17,786	1,536	2,908	316,313	7,984	1,349	4,864	1,667	5,123
2016	19,080	871	2,744	302,202	9,140	1,356	4,702	1,846	3,734
2017	21,591	960	2,743	313,772	12,236	1,487	5,952	1,811	4,036
2018	24,007	1,030	2,889	329,196	10,817	1,611	6,404	4,483	3,751
2019	21,099	1,149	2,914	326,445	7,353	1,868	5,455	5,121	3,977
2020	16,974	1,234	2,848	122,391	3,240	1,558	5,454	5,567	3,820
2021	18,672	1,440	3,212	-	6,027	2,039	9,335	6,745	4,291
2022	21,464	1,931	3,377	-	9,592	2,627	8,629	7,447	5,344
2023	18,122	1,140	3,070	-	9,221	2,501	8,671	6,058	4,959

주: 1) GSP(일반특혜관세)는 1976년에 발효, 1997년 5월 특정 최빈국 수혜 국가(GSP-LDBC)로 확대

2) CBERA(카리브유역경제복구법)은 1984년 1월 1일에 발효, 2000년 CBTPA로 확대

3)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는 CFTA(미-캐나다 FTA, 1989년)를 대체하여 1994년부터 발효되었으나, 2018년 USMCA로 대체됨

4) AGOA(Africa Growth and Opportunity Act, 아프리카성장기회법)는 2000년 10월에 발효

자료: USITC(2024) p. 9.

〈표 II-3〉 최근 미국의 특혜세율에 따른 수입 과세가격(2)

(단위: 백만달러)

연도	모로코 FTA	바레인 FTA	DR-CA FTA ¹⁾	오만 FTA	페루 FTA	한국 FTA	콜롬비아 FTA	파나마 FTA	일본 FTA	USMCA
2014	242	540	12,855	611	3,414	17,136	8,614	32	-	-
2015	257	527	13,526	598	2,732	17,894	5,405	41	-	-
2016	194	499	13,664	815	2,662	35,063	5,387	53	-	-
2017	205	583	13,692	704	3,313	33,153	5,010	56	-	-
2018	238	509	14,707	905	3,730	33,404	5,711	50	-	-
2019	257	604	14,869	727	3,571	36,570	6,084	49	-	-
2020	307	349	12,758	522	3,513	35,356	4,530	48	2,823	152,979
2021	389	510	16,106	944	4,194	42,720	5,130	48	3,721	324,008
2022	585	723	17,786	1,312	5,476	53,618	7,765	60	3,932	372,387
2023	433	573	17,357	881	5,501	61,464	7,015	66	3,731	398,110

주: 1) DR-CA FTA(Dominican Republic-Central America FTA)는 2004년 8월 서명되었고, 엘살바도르,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는 2007년 3월, 코스타리카는 2009년 1월에 발효

자료: USITC(2024) p. 10.

2. 미국 행정부의 주요 관세정책

가. 주요 관세정책의 역사와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 미국의 무역정책에서 관세는 연방정부의 수익을 창출하고 국내 생산자를 외국의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하는 보호 장벽으로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음
 - 미국의 헌법 비준 이후, 제1차 미 의회는 수입으로 인한 자국 산업의 피해 및 통화 유출, 영국과의 무역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하여 「1789년 관세법(Tariff Act of 1789)」¹²⁾을 통과시켰고,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수입 상품에 대한 관세 징수가 허용됨¹³⁾
 - 「1789년 관세법」은 미국 최초로 연방 차원에서의 균일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별도의 주 세율 시스템은 철폐됨¹⁴⁾
 - 1860년까지 관세는 일반적으로 연방 수입의 약 80~95%를 차지하였음
 - 미국은 19세기 초까지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1934년 이후에는 자유무역을 촉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부터 보호무역으로 복귀함¹⁵⁾
 - 1861년부터 1933년까지 수입 관세는 주로 외국 경쟁으로부터 국내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평균 50% 수준으로 부과됨
 - 1934년 이후부터 2016년까지 무역정책의 주요 목표는 무역 자유화로, 다수의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였으며 GATT 및 WTO 회원국과의 상호 관세율 협상 등을 통해 평균 수입 관세는 약 5%로 미 역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함
 - 역사적으로 미국 관세정책의 주요 특징은 지역 이익을 대표하는 이해관계자의 정치적 또는 경제적 요인이 반영되었다는 점임

12) 1789년 재무부 장관인 알렉산더 해밀턴이 국내 및 해외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수입이 필요함에 따라 평균 관세율을 5%에서 7~10%로 인상할 것을 제안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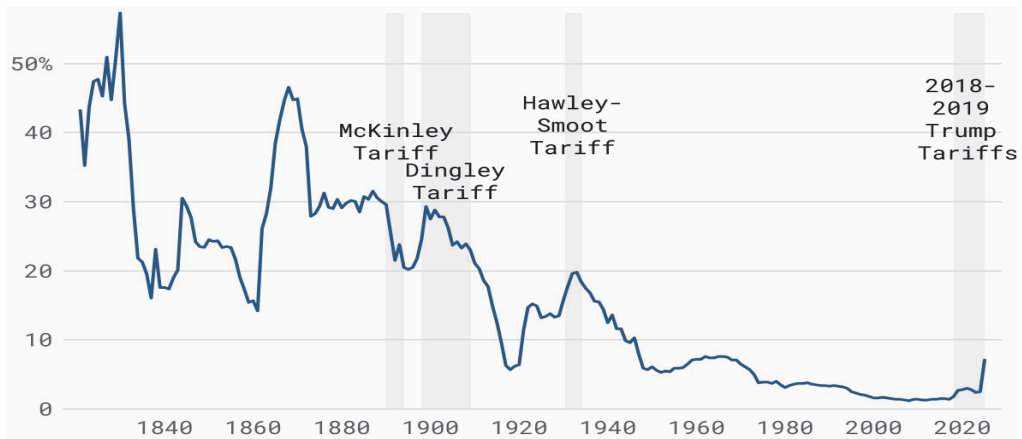
13) Douglas A. Irwin, "Trade Policy in American Economic History", Annual Review of Economic, 2020, p. 24.

14) 상동

15) 상동

- 관세는 무역 적자와 외국 경쟁의 압박을 줄임으로써 미국의 급속한 발전과 산업화를 가능하게 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음¹⁶⁾

[그림 II-1] 미국의 평균 관세율(1821~2023)



자료: Tax foundation, “Trump Tariff: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ump Trade War”, 2025,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검색일자: 2025. 02. 05.

- 또한 의회가 법률을 제정하거나 대통령이 무역 협정의 협상에 따른 정책 등을 반영하기 위해 관세를 의도적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음
 - 원칙적으로 관세는 헌법에 따라 의회에 의해 부과되었으나, 관세가 외교 정책 및 무역 협상의 도구로 활용되면서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게 됨
 - 1930년대 이전에는 의회가 일반적으로 헌법에 따라 관세율을 설정함
 - 의회는 여러 법률을 통해 대통령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특정 무역 문제에 대응하도록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재량 권한을 부여함

16) Hayashi Yuka, “Biden Struggles to Push Trade Deals with Allies as Election Approaches”, *The Wall Street Journal*, Dec. 28, 2023, <https://www.wsj.com/politics/policy/biden-struggles-to-push-trade-deals-with-allies-as-election-approaches-fc512595>, 검색일자: 2025. 01. 13.

-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미 의회는 광범위한 관세 설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으며, 대통령은 의회 의원들보다 보호주의 압력으로부터 더 자유로우므로 결과적으로 권한 위임은 전 세계 관세율의 하락을 촉발함¹⁷⁾
 - 미국이 낮은 관세율과 글로벌 무역 시스템을 추구하는 것은 미 행정부의 재량에 따른 결과임
 - 즉, 의회는 무역 협상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리더십에 의존해 왔음을 의미함

- 1930년대부터 미 의회는 대통령에게 관세 관련 권한을 일부 위임하기 시작함
 - 1930년대 초 미국은 대공황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면서 「1930년 관세법 (Tariff Act of 1930)」 등을 통해 수입 상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였음
 - 특히, 동법 제338조는 대통령에게 미국이 자국 기업에 차별적 조치를 하는 국가에 수입 배제 및 추가 세금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하지만 대공황 기간 미국과 전 세계 관세율이 인상되면서 수출이 급감했고, 이에 미 의회는 대통령에게 상호 무역 협정을 체결하고 미리 설정된 한도까지 관세 인하를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을 한시적으로 부여함¹⁸⁾
 - 1934년 「상호관세법(Reciprocal Tariff Act)」 제정을 통해 명시적으로 대통령에게 ‘무역협상권한’을 부여함
 - 동법에 따라 관세 인하 협정은 의회의 추가적인 조치 없이 발효가 가능함
 - 1934년 이전까지 의회는 모든 수입품의 관세율 설정과 관련한 법안에 대해 투표하였으나, 이를 기점으로 무역 협정의 협상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면서 투표는 사실상 종료되었음¹⁹⁾
 - 「상호관세법」에 의해 부여된 대통령의 무역협상권한의 시한이 수차례 연장되면서 1962년까지 미국은 30여개국과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며 관세를 인하시거나 철폐하였음²⁰⁾

17) CRS(2024), p. 2.

18) 상동

19) Douglas A. Irwin(2020), p. 26.

- 이후 의회는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을 제정함으로써 대통령의 관세 협상 권한을 확대하고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1962년 무역확장법」은 대통령에게 5년 동안의 무역 협정 체결 권한을 부여하였음
 - 또한 관세를 최대 50%까지 인하하고 5% 미만 관세를 철폐할 수 있도록 하여 대통령의 관세 협상 권한을 강화함²¹⁾

- 1970년대부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의회는 일정한 사유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는 법 규정을 마련함
 - 1971년 닉슨 행정부는 미국이 국제수지 위기의 경제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대통령의 대외거래 제재 권한을 인정한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Enemy Act of 1917, TWEA)」을 동원해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함²²⁾
 - 1974년에는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을 통해 비관세 장벽을 다루는 무역 협정에 대해 집행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무역협상권한(Trade Promotion Authority, TPA)’을 설정함²³⁾
 - 1960년 후반, 무역에 대한 비관세 장벽이 무역 협상의 주요 쟁점이 되면서 무역 협상 전에 기존 법안의 변경 등을 선언으로 시행하는 게 어려워짐²⁴⁾
 - 이에 따라 미 의회는 특정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협정을 시행하도록 하는 ‘신속처리권한(fast-track Authority)’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무역협상권한(TPA)²⁵⁾’으로 명함²⁶⁾

20) 유지윤,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p. 7.

21) 상동

22) 상동

23) CRS(2024), p. 2.

24) 상동

25) TPA는 1994년 만료된 ‘신속처리권한’이 2002년 조지 부시 대통령에 의해 부활되면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The White House, “What is Trade Promotion Authority?”, 2002, <https://georgewbush-whitehouse.archives.gov/infocus/internationaltrade/talkers.html>, 검색일자: 2025. 01. 08.), ‘무역촉진권한’, ‘무역증진권한’ 등으로 번역되고 있으나, 외교부에서 ‘무역협상권한’으로 사용하여 이를 적용함

- TPA는 의회가 미국의 협상 목표와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의 사항 및 통지 요건 등을 수립함으로써, 대통령이 해당 목표와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협정의 수정 없이 찬반투표만으로 승인되도록 하는 신속 처리 권한임²⁷⁾
 - 가장 최근의 TPA인 「2015년 의회의 초당파적 무역 우선순위 및 책임법 (Bipartisan Comprehensive Trade Priorities and Accountability Act of 2015)」은 2021년에 만료됨²⁸⁾
 - 1974년 이후 미 의회는 입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무역 협정의 협상 및 이행에 관한 권한을 부여해 왔으나, 광범위한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²⁹⁾
- 한편, 미국은 1948년 설립된 GATT의 창립국으로 국제무역을 증진하는 데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으며, 이후 1995년 WTO로 개편되면서 다자간 무역 협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 환경을 확대하는데 주력함
- GATT 및 WTO는 관세 장벽과 수출입 제한을 제거함으로써 국제무역을 증진하기 위해 체결된 무역 협정으로 회원국 상호 간에 관세율을 인하하고 최혜국 대우를 부여하여 관세 장벽을 제거함
 - 이에 따라 미국은 자유 무역의 확대를 목표로 새로운 무역규제 도입을 방지하고 주도적으로 낮은 관세율을 유지하였음
 - 미국은 개발도상국이 글로벌 무역 체제에 통합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으며 국제무역의 공정성을 제고하였음

26) CRS, *Presidential Authority over Trade: Imposing Tariffs and Duties*, 2016, p. 3.

27) USTR, "Trade Promotion Authority", <https://ustr.gov/trade-topics/trade-promotion-authority>, 검색일자: 2025. 01. 08.

28) CRS(2024), p. 2.

29) 유지윤(2024), p. 7.

〈표 II-4〉 미국 관세 역사에서의 주요 정책

연도	내용
1913	「언더우드-시몬스 관세법(Underwood-Simmons Tariff Act)」에 따라 무역 활성화를 위해 평균 관세율을 약 40%에서 25%로 낮추고, 연방 소득세를 재도입함으로써 연방 수입의 주 원천이 소득세가 됨
1930	「1930년 관세법」의 스무트-홀리 관세(Smoot-Hawley Tariff)는 의회가 세율을 설정한 마지막 관세로, 미국 관세를 1828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인상함
1934	「상호관세법」이 제정됨으로써 대통령에게 양자 간 상호 무역 협정 협상에 대한 권한이 위임되었으며, 동 법은 1970년대까지 주기적으로 갱신되었음
1947	미국과 23개국이 GATT에 가입하여 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이 낮아짐
1962	「1962년 무역확장법」을 제정하며 대통령의 관세협상 권한이 확대하고 수입품이 초래하는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1974	「1974년 무역법」을 통해 무역 협정에 대해 집행 법안을 신속히 제정할 수 있도록 ‘무역협상권한(TPA)’을 설정함
1976	일반특혜관세제도(GSP)를 도입하여 개발도상국에 대한 우대 관세율을 설정함
1995	WTO에 가입하였으며, 이는 GATT/WTO 회원국들이 다자간으로 관세율의 주요 인하여 합의한 마지막 사례임

자료: CRS(2024) p. 2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하지만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WTO의 일부 기능과 기존의 낮은 관세 정책을 반대하며,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여 특정국 및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상함
 - 트럼프는 기존의 낮은 관세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관세를 인상함
 - 그 결과, 미국 수입품에 부과된 관세는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약 370억달러에서 약 740억달러로 두 배 증가함³⁰⁾
 -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약 770억달러 관세를 징수하면서 트럼프 1기 정책의 대부분을 유지함³¹⁾
 - 단, 일부 의원과 위원회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관세를 인상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함

30) CRS(2024), p. 2.

31) 상동

나. 미국 관세정책 관련 조사 및 관리

- 한편, 미국의 관세정책은 법률에 따라 관세 부과와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가 선행된 후 발효되어야 함³²⁾
- 대통령은 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 USDOC), 무역대표부(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 USTR), 국제무역위원회(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ITC) 등에 관세 부과를 위한 보고서 작성을 명령한 후 관세 정책을 발효하는 절차를 준수해야 함³³⁾

〈표 II-5〉 미국 관세정책 관련 기관

구분	상무부 (USDOC)	무역대표부 (USTR)	국제무역위원회 (ITC)
역할	경제 및 무역 지원, 수출 촉진	무역정책 수립 및 외국과 협상 주도	무역 조사 및 정책 권고
소속	대통령 내각	대통령실	독립적인 연방기관
주요 업무	반덤핑/상계 관세 조사, 수출지원	FTA 협상, 무역 분쟁 해결	산업 피해 조사, 지적재산권 침해 조사
근거법	1930년 설립된 연방정부 부서	「1962년 무역확장법」	「1930년 관세법」

자료: 한국은행 뉴욕사무소(2024), p. 24

- 미국의 관세정책 관리에 대해서는 재무부 장관이 관세 징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책임이 있으며, 미국 세관 및 국경 보호국(CBP)은 해당 규정을 관리함
- 상품이 미국의 항구 또는 공항에 반입되면, 상품은 미국 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 HTSUS)에 따라 분류되고 그에 따른 관세율이 적용됨
 - 수입자는 상품의 금액 및 수량 등을 자체적으로 수입 신고하며, CBP는 수입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 및 물품 검사 후 관세를 부과함

32)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5년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4, p. 24.

33) 상동

- 또한 미국의 HS code는 제1류부터 제97류까지의 품목분류와 제98류의 특수 분류 및 추가 관세가 적용되는 제99류 임시 입법 분류로 구성됨
- 미국의 관세율표는 세계관세기구(WCO)의 '상품의 명칭 및 분류에 대한 통일시스템에 관한 국제협약(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HS 협약)'을 채택하고 있음
 -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 제1204조에서 HTSUS(The 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를 적용함
- HS 협약에서는 제98류와 제99류를 국가별 활용을 위해 유보하고 있으며, 미국은 제98류와 제99류를 제22부에 포함하여 활용하고 있음³⁴⁾
 - 제98류는 특수한 환경에서 관세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분류 규정임
 - 제99류는 입법 및 행정적 조치에 따라 제1류~제98류의 조항을 일시적으로 수정·변경하거나 부수적인 법에 의해 추가 의무 및 수입 제한을 적용하는 경우에 대한 분류 규정임³⁵⁾

34)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35) 상동

Ⅲ. 미국 관세정책의 근거법 규정

1. 미 행정부에 위임된 관세 권한

가. 대통령에 대한 관세 권한 위임의 근거 조항

- 미 헌법은 사실상 대통령에게 국제 상거래에 대한 특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³⁶⁾
 - 미 헌법은 의회에 세금, 관세 등을 부과·징수하고 국제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부여함
 - 미 헌법 제1조는 의회에 ‘세금, 관세, 수입세 및 소비세의 부과·징수 권한’과 ‘외국과의 무역 및 여러 주와의 상업과 무역에 대한 규제 권한’을 부여한다고 규정함³⁷⁾
 - 사실상 미 헌법은 대통령에게 국제 협정을 체결할 권한은 부여하나, 무역규제 및 관세 부과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음
 - 미 헌법 제2조는 대통령에게 ‘상원의 조언과 동의하에 조약을 체결할 권한’만을 부여하며, 무역에 대한 구체적인 권한에 대해서는 부여하지 않음³⁸⁾
 - 즉, 대통령은 국제 무역 협정을 협상할 권한이 있으나, 외국 상업의 규제와 관세 부과에 대한 독점적인 권한을 갖지는 않으므로 대통령은 관세를 부과·조정할 명시적인 권한을 가지지 못함³⁹⁾

36) CRS(2016), p. 1.

37) U.S. CONST. Article I., Section 8.

38) U.S. CONST. Article II., Section 2.

39) CRS(2016), p. 1.

- 그러나 의회는 법률을 통해 대통령에게 특정 상황에서 관세 등을 부과·조정할 권한을 위임할 수 있음⁴⁰⁾
 - 「1917년 적성국교역법」을 근거로 대통령은 국가가 전쟁 중일 때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며,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에는 전쟁 중이 아닐 시에도 부과할 수 있음
 - 「1934년 상호관세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관세를 인하할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에 따라 의회는 1934년부터 1974년까지 사전 승인된 수준 내에서 타 국가와의 관세율을 협상하고, 입법이 아닌 선언을 통해 합의된 관세율을 시행할 수 있는 일부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였음
 - 1974년 이후 의회는 대통령 선언만으로 무역 조치를 시행하는 데 부정적이었고, 대신 「1974년 무역법」에 따라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속한 의회 절차를 통해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무역협상권한’을 허용함
 - 즉, 의회는 무역 협정의 협상 및 이행을 규율하는 다양한 조항을 제정하였으나, 대통령에게 관세율을 변경할 일반적인 권한을 위임하지는 않았음
 - 따라서 대통령의 관세 부과·조정 등에 대한 명시적인 헌법상의 권한은 없으므로 법률에서 관세 관련 조치에 대한 권한을 찾아야 함

- 의회가 대통령에게 무역 관련 권한을 위임하는 법률 조항은 다양한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대통령이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제약이 따름
 - 대부분 조항은 대통령이 무역 조치 시행 전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명시함
 - 최근 법률에서는 “Whenever(언제든지)”에 대한 조건을 설정한 후 제한된 시간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인 권한을 정의함⁴¹⁾

40) CRS(2016), pp. 2~3.

41) CRS(2016), p. 3.

〈표 Ⅲ-1〉 대통령의 권한 위임의 조건

법률	제약 및 조건
「1917년 적성국교역법」 제5조(b)	“전쟁 중에 대통령은”... 외국 국가 또는 그 국민이 소유한 재산과 관련된 모든 인수, 보유, 사용, 이전, 수출입 또는 거래 등을 조사, 규제 및 무효화, 금지하거나 이에 대한 모든 권리, 권한 또는 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1930년 관세법」 제338조(a)	대통령은 “공익에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새로운 관세 또는 추가 관세를 지정할 수 있다.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b)~(c)	“국가안보를 해칠 위협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물품이 미국으로 수입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당 물품의 수입을 조정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	“무역협정에서 미국의 권리가 부인되거나 외국의 행위, 정책, 관행이 무역협정의 조항을 위반하거나 미국에 혜택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는 특정 관세율을 수정할 권한을 위임한다.
「1974년 무역법」 제501조	대통령은 조항에 따라 수혜 개발도상국의 모든 적격 품목에 대해 면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 제203조(a)	대통령이 “비정상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처리하기 위해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하면, 특정 수입, 수출 및 자산과 관련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993년 북미 자유무역협정 이행 법안」 제201조(a)	대통령은 “협정과 특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수정, 연장, 추가할 수 있다.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법」 제111조(a)	대통령은 “특정 조항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관세를 수정, 연장, 추가할 수 있다.
「2005년 CACM FTA」 (도미니카공화국-중미) 제201조(a)	대통령은 “조약의 특정 조항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세를 수정, 연장, 추가할 수 있다.
「2015년 의회의 초당파적 무역 우선순위 및 책임법」 제103조(a)	대통령은 “외국의 무역 제약이 심각하고 이것이 무역 협정을 진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경우” 관세를 수정하는 선언을 할 수 있다.

자료: CRS(2016), pp. 3~7.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나. 대통령 권한 행사에 대한 법률적 문제 제기

-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위임받은 무역 조치 권한을 행사할 때, 이와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일반적으로 ① 연방 법원이 대통령의 위임권을 검토할 관할권이 있는지 ② 대통령의 조치가 의회에서 위임한 특정 권한의 범위에 속하는 지 ③ 대통령의 조치가 위임된 권한과 합리적인 관련이 있는지 등에 대한 문제가 발생함⁴²⁾
 - 문제 제기는 법률에 따른 대통령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 및 실질적 문제를 모두 포함함

- 법원은 의회의 권한 위임에 따라 대통령의 무역 조치에 대한 문제 제기를 심사할 수 있는 관할권(Jurisdiction)이 있는지를 결정해야 함
 - 미 국제무역법원의 관할권은 해당 법원이 「1930년 관세법」의 특정 사안에 대한 제한적인 독점권을 가지고 있으며, 연방 지방 법원도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대통령의 무역 조치에 대한 판결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됨⁴³⁾
 - 법원이 사안을 검토할 판결권이 있고, 의회의 권한 위임이 합치되는 경우 대통령이 규정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는지를 검토할 가능성이 높음

- 또한 의회의 권한 위임은 법률이 대통령에게 법 제정 역할이 아닌 법에 명시된 조치를 실행하도록 요구하는 한 헌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함
 - 대통령에게 위임된 권한이 입법부의 ‘대리인(agent)’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합헌성이 인정됨⁴⁴⁾
 - 해당 원칙은 대통령의 권한이 입법권을 초과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하면서, 향후 의회와 행정부 간의 역할 분담에 중요한 기준이 됨
 - 즉, 의회가 대통령에게 관세 권한을 위임하는 경우 대통령은 단순히 의회의 목적을 이행하는 역할을 맡음으로써 위임의 합헌성을 유지할 수 있음

- 법원에 심사 관할권이 있고, 의회의 권한 위임이 헌법에 부합한다면, 대통령이 법률에 명시된 위임된 권한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였는지를 검토해야 함⁴⁵⁾

42) CRS(2016), p. 7.

43) CRS(2016), p. 10.

44) CRS(2016), p. 12.

- 법원은 행정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의 추론은 심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나, 위임된 권한을 실행하는 데 선택된 수단이 그 결정과 합리적인 관계가 있는지를 면밀하게 조사해야 함⁴⁶⁾

〈표 Ⅲ-2〉 미국 대통령 직권 관세 인상의 근거 및 사례

법안	관세 인상 근거	사례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해당 품목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때 발동	· 트럼프 1기에서 다수의 국가를 상대로 철강, 알루미늄에 부과
「1974년 무역법」 제122조	· 국제 지급결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수입 제한	· 거의 사용되지 않음
「1974년 무역법」 제301조	· 상대국 정부의 불합리·차별적 조치 등이 있을 때 시정 목적으로 관세 부과	· 트럼프 1기에서 대중국 관세 인상의 주요 수단으로 사용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미국산 상품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국가에 최대 50% 관세 부과	· 거의 사용되지 않음
「1977년 국제긴급 경제권한법」	·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상황에서 광범위하게 발동 가능	· 닉슨 정부는 지급결제 위기 당시 전신인 「적성국교역법」을 통해 10% 보편 관세 부과 · 트럼프 1기에서 멕시코와 ‘국경 위기 사건’ 당시 멕시코산 품목에 5% 관세 인상

자료: Maruyama, Galvin, and Reinsch(2024); 강구상 외,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KIEP 오늘의 세계 경제, 제24권 제17호, 2024, p. 6.

45) CRS(2016), p. 12.

46) 상동

2. 주요 관세정책의 근거법 규정

가. 「1930년 관세법」 제338조

-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은 일반적으로 ‘스무트-홀리 관세법(Smoot-Hawley Tariff)’으로도 알려져 있으며, 1930년 대공황 당시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를 기반으로 제정됨
 - 해당 법안에 따라 관세율은 약 40%로 인상되었고, 대공황의 가격 하락으로 인해 1932년에는 약 60%까지 인상되면서 의회가 제정한 관세법 중 논란이 가장 많은 사례가 되었음⁴⁷⁾
 - 20,000개 이상의 수입 상품에 대해 평균 5%, 최고 400% 관세를 인상하였음
 - 캐나다, 프랑스, 영국 등이 보복 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의 수출입이 67% 감소하는 주요 요인이 되면서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의견도 있었음⁴⁸⁾
- 「1930년 관세법」의 제338조는 ‘외국에 의한 차별’에 대해 대통령이 해당 국가의 수입품에 관세를 신설 또는 추가 부과하거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대통령은 공익이 충족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선언을 통해 외국에서 재배·생산된 물품 또는 외국 선박에서 수입된 물품에 대해 새로운 또는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⁴⁹⁾
 - 해당 조치는 ① 미국 물품에 차별적인 수수료나 세금, 규제, 제한을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경우, ② 직간접적으로 차별적인 법률, 행정 규제, 관행을 두어 미국 상업을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적용함

47) Douglas A. Irwin(2020), p. 41.

48) 대부분 경제학자는 스무트-홀리 관세로 인한 관세 인상이 수입 경쟁 산업과 수출 지향 산업 간의 생산 구성에 변화를 일으킬 수는 있으나 거시적으로 대공황을 유발하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미국 수출에 대한 상대국의 보복 관세를 촉발했다는 것에서 논란이 있음(Douglas A. Irwin(2020), p. 41.)

49)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a) (19 U.S.C. §1338)

- 대통령은 불이익을 상쇄하기 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해당 세율은 종가세의 50%(특정 물품 또는 선박 수입품은 30%)를 초과할 수 없음⁵⁰⁾
 - 해당 관세는 대통령의 선언 후 30일 후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에 적용함⁵¹⁾
 - 외국이 미국 상업을 차별하고, 조치 이후에도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거나 증가한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국가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거나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⁵²⁾
 - 대통령은 미국의 공익에 부합하는 경우 해당 국가 전체 또는 특정 지역으로 제한할 수 있으며, 언제든지 정지, 철회,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⁵³⁾
 - 또한 동법 제337조는 ‘수입에 있어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정의, 무역위원회의 조사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음
- 동 규정에 따라 국제무역위원회(ITC)⁵⁴⁾는 미국에 대한 차별을 조사해야 하며, 재무부는 필요한 규정을 제정해야 함
- 국제무역위원회는 미국에 대한 차별이 어느 국가에서 시행되고 있는지 항시 파악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하며, 차별 행위를 확인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권고안을 제출할 의무가 있음⁵⁵⁾
 - 재무부 장관은 이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하는 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규칙 및 규정을 제정해야 함
- 해당 조항을 근거로 1930년대에 관세위원회는 무역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과 개별 청원에 대해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949년 이후부터는 제338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⁵⁶⁾

50)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d)

51) 상동

52)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b)

53)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c)

54) 최초 동법에 명기된 미 관세위원회(United States Tariff Commission, USTC)는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신으로 「1974년 무역법」 제정과 함께 국제무역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55) Tariff Act of 1930 Section 338(g)

56) 유지윤(2024), p. 13.

나.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 「1962년 무역확장법(Trade Expansion Act of 1962)」은 무역 협정을 통해 미국의 외교정책 및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규정되었음
 - 「1962년 무역확장법」은 비상시 상대국과의 경제 관계를 통제하는 것과 달리 특정 상품의 수입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 동 규정은 GATT의 내용을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해 발의된 「1955년 무역 협정 연장법(Trade Agreement Extension Act of 1955)」에서 최초로 등장하였으나, “국가 방위 요건(national defense requirement)에 위협이 될 정도의 국내 생산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대통령의 관세 협상권만을 제한한다”는 소극적인 조항이었음⁵⁷⁾
 - 그러나 1958년 개정에서 해당 조항은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 요건으로 확대되면서 전시를 대비한 국방 요건 외에 수입품이 국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후생에 따른 ‘경제안보’까지도 고려할 수 있게 됨⁵⁸⁾

-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는 해당 수입이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에게 행정 조치를 통해 수입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제232조는 “수입품의 영향으로 국가안보의 위협이 존재할 경우는 수입 조치를 포함한 필요한 조치를 허용한다”고 규정함⁵⁹⁾
 - 국가안보의 정의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으나, 넓게는 국가 경쟁력이 국가안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국가 능력과 관련이 있으므로 포괄적인 조사도 시행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⁶⁰⁾
 - 또한 제232조는 대통령이 특정 상황에서 의회를 거치지 않고 행정 조치를 통해 관

57) 유지영, 「국가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제2017-12호, 2017, pp. 9~41.

58) 유지영(2017), p. 12.

59)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a) (19 U.S.C. §1862)

60) 유지영(2017), p. 13.

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제232조에 따라 상무부는 조사를 통해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정하는 경우 대통령은 해당 수입을 조절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상무부는 정부 및 기관의 요청,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상무부 장관의 직권에 따라 특정 수입품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⁶¹⁾
 - 조사에서 제기된 정책적 문제 등에 관해서는 국방부 장관과 협의해야 함
 - 조사는 특정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에 중점을 두어야 함
 - 상무부 장관은 조사 개시 후 270일 이내 권고를 포함한 조사 결과를 대통령에게 보고·제출해야 함
 - 대통령은 해당 보고를 받은 후 90일 이내에 공식적으로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함⁶²⁾
 - 조치 시행 결정 후 15일 이내에 제232조에 따른 권한으로 관세 부과 및 수입 할당 등을 통해 수입 조정 조치를 시행해야 함
 - 대통령은 조치 이행 결정 시 의회에 사유서를 제출해야 함
 - 1980년 이후 제232조에 대한 조사는 총 14건 실시됨⁶³⁾
- 트럼프 대통령은 제232조를 활용해 주요국의 수입 상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함
 -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량과 상황이 제232조의 정의와 같이 “국가안보를 해칠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하여 10~25%의 관세를 부과함
 - 당시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Wilbur Louis Ross Jr.)는 강철의 과잉 생산과 강철 수입량이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국가 비상시 국가안보 생산 요구 사항을 충족

61)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b)

62) Trade Expansion Act of 1962 Section 232(c)

63) U.S. Department of Commerce, “Fact Sheet: Section 232 Investigations: The Effect of Imports on the National Security”, April 20, 2017, <https://www.commerce.gov/news/fact-sheets/2017/04/fact-sheet-section-232-investigations-effect-imports-national-security>, 검색일자: 2024. 12. 09.

시킬 수 있는 자국 능력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보고함⁶⁴⁾

-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철강 수입이 수출량의 약 4배에 달하였으며, 알루미늄 수입이 일차 알루미늄에 대한 총수요의 90%로 증가했으므로 해당 수입이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결론 내림⁶⁵⁾

다. 「1974년 무역법」 제301조와 슈퍼 제301조

-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은 보호무역주의를 기초로 제정된 통상법으로, 미국에 불공정한 관행을 행하는 외국에 보복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무역 협정 및 관세와 관련한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함
 - 동법은 미국의 경제성장과 완전 고용을 촉진하고 개방 및 비차별적인 세계 무역을 통하여 미국과 외국 간의 경제적 관계의 강화, 국제무역 관계에서의 공정과 형평 성립 등의 목적으로 제정되었음⁶⁶⁾
 - 동법이 제정된 1970년대 초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확대되던 시기였음
 - 동법에 따라 대통령은 외국 또는 미국의 현행 관세 등의 수입 제한이 미국의 대외 무역에 부당한 부담이 되는 경우 다음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⁶⁷⁾
 - (a) 외국 또는 기관 등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거나
 - (b) 해당 무역 협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현행 관세의 변경, 유지, 과세, 현행 면세를 선언할 수 있음
 - 특히, 동법은 의회가 행정부에 ‘신속처리권한(Fast Track Authority)’을 부여함으로써 무역 자유화를 위한 의회의 지원을 규정함⁶⁸⁾

64) Investopedia,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What It Is and How It Works”, February 6, 2025,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ection-232-trade-expansion-act.asp>, 검색일자: 2024. 12. 09.

65) 상동

66) Trade Act of 1974 Section 2 (19 U.S.C. § 2102)

67) Trade Act of 1974 Section 101 (19 U.S.C. § 2111)

68) 세계법제정보센터, 「미국무역법 1974 요약본」, https://world.moleg.go.kr/viewer/skin/doc.html?fn=2754_63487&rs=/viewer/result/converted_files/, 검색일자: 2024. 12. 02.

- '신속처리권한'은 1994년 폐지되었으나, 2002년 개정된 무역법에 의해 '무역협상권한(TPA)'으로 재부여되었음⁶⁹⁾

- 또한, 「1974년 무역법」은 악화된 미국의 대내외 경제 상황을 반영하여 타국의 불공정 행위 제재(제301조), 국제수지 악화 대응(제122조) 등을 위해 대통령에게 관세 부과 권한을 위임함⁷⁰⁾
- 한편, 제402조(잭슨-베닉 수정조항)는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한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부인하였으며, 제404조는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정상 무역 관계 지위를 부여한 비시장경제 국가에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⁷¹⁾

1) 무역법 제301조(Regular 301)

- 「1974년 무역법」 제301조는 무역대표부가 조사를 통해 외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및 미국의 피해를 확인하는 경우 대통령이 해당 국가에 일련의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무역대표부는 조사를 통해 ① 무역 협정이 미국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② 외국의 관행 등이 미국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관세 및 수입 제한 등 승인된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⁷²⁾
- 조치와 관련한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는 경우 해당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통령은 이 조항에 따른 권한 내에서 지시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함⁷³⁾
- 또한 무역대표부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재량적으로 권한 내에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음⁷⁴⁾

69) 세계법제정보센터(검색일자: 2024. 12. 02)

70) 유지윤(2024), p. 7.

71) 상동

72)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a) (19 U.S.C. § 2411)

73)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a) (19 U.S.C. § 2411)

74)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b) (19 U.S.C. § 2411)

- 무역대표부는 상기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다음의 권한을 부여받음⁷⁵⁾
 - (a) 무역 협정의 혜택 일시 중단, 철회 및 제한 조치
 - (b)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기간 동안 해당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 및 수입 제한 조치 또는 해당 외국의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부과 및 제한 조치

- 제301조에 따른 부과 조치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무역대표부의 조사가 선행되어야 함
 - 무역대표부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개시할 수 있음⁷⁶⁾
 - 무역대표부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함
 - 무역대표부는 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 대상국 정부에 협의를 요청해야 하며, 조사 개시 후 12~18개월 이내에 협의가 완료되어야 함⁷⁷⁾
 -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대통령은 보복 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보복 조치 발표 후 30일 이내에 시행해야 함⁷⁸⁾
 - 부과된 조치는 무역대표부에 연장 요청을 하지 않는 한 발동 4년 이후 종료되며, 연장 요청이 있는 경우 무역대표부는 제301조의 목적 달성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를 수행해야 함⁷⁹⁾

- 미국은 제301조를 근거로 중국산 수입품 및 주요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2018년부터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시정을 이유로 광범위한 중국산 상품에 대해 여러 단계에 걸쳐 7.5~25%의 관세를 부과함⁸⁰⁾
 - 바이든 행정부도 2024년 5월 제301조 관세에 대한 필수 법적 검토를 발표하여 관세를 유지하고 180억달러 규모의 상품에 관세 인상 조치를 발표함

75) Trade Act of 1974 Section 301(C) (19 U.S.C. § 2411)

76) Trade Act of 1974 Section 302(a) (19 U.S.C. § 2412)

77) Trade Act of 1974 Section 304(a) (19 U.S.C. § 2414)

78) Trade Act of 1974 Section 305(a) (19 U.S.C. § 2415)

79) Trade Act of 1974 Section 307(C) (19 U.S.C. § 2417)

80) 유지윤(2024), p. 10.

- 또한 제301조에 근거하여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총 6건의 관세 조사를 진행함
 - 특히 EU가 에어버스사에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여 WTO의 분쟁 판결에 따라 100%의 관세를 부과하였으나, 이후 2021년 바이든 행정부와 EU 간 합의를 통해 관세 부과가 유예됨⁸¹⁾

2) 슈퍼 301조(Super 301)와 스페셜 301조(Special 301)

- 「1974년 무역법」 제310조(이하, 슈퍼 301조⁸²⁾)는 무역대표부의 보고서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행하는 국가를 ‘우선 협상 대상 국가(Priority Foreign Countries)’로 지정해 협상을 진행하고, 합의하지 못한 경우 보복 조치를 시행하도록 규정함⁸³⁾
- 슈퍼 301조는 불공정 무역 관행의 조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조치의 결정 및 집행에 관해서는 「무역법」 제301조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함
 - 무역대표부는 무역장벽 보고서 발표 후 180일 이내에 무역대표부의 직권으로 우선협상 대상 국가를 지정함
 - 이후 슈퍼 301조의 절차는 「무역법」 제301조와 동일하나 무역대표부가 매년 제출하는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우선협상대상국을 지정하여 조사와 협상을 진행한다는 차이가 있음⁸⁴⁾
- 또한 「1974년 무역법」 제182조에 따라 무역대표부는 ‘스페셜 301조(Special 301)’⁸⁵⁾

81) Tax Foundation(2024), 검색일자: 2025. 01. 09.

82) 「1974년 무역법」의 301조 규정이 「1988년 종합무역경쟁법(Omnibus Trade and Competitiveness Act of 1988)」에 의해 강화된 것으로, 통상 301조라 함은 「1974년 무역법」상의 제301~309조까지의 조항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용어이며, 보복조항인 제310조가 추가되면서 강화된 규정을 ‘슈퍼 301조’라는 별칭으로 불리게 됨(기획재정부 시사경제용어사전, <https://www.moef.go.kr/sisa/dictionary/detail?idx=1564>, 검색일자: 2025. 01. 09.)

83) 유지윤(2024), p. 12.

84) 상동

85)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통상 301조(레귤러 301조)이고, 별도로 USTR의 직권조사를 규정한 것이 슈퍼 301조, 스페셜 301조이며, 스페셜 301조에 의해 불공정 국가로 지정되면 레귤러 301조에 의한 보복 절차에 따라 보복 조치가 취해짐(한경 경제용어 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74>, 검색일자: 2025. 12. 26.)

보고서를 통해 지식재산권(IP) 보호와 관련된 전 세계의 동향에 대해 연례적으로 검토를 수행함

- 동법 제182조(19 U.S.C. §2242)는 지식재산권 분야에 대한 불공정 무역을 별도로 제재하는 규정임
- 무역대표부는 매년 4월 말까지 각 국가의 지식재산권 보호 내용을 평가하며 우선협상대상국(Priority Foreign Country, PFC), 우선관찰대상국(Priority Watch List, PWL), 감시대상국(Watch Kist, WL), 관찰대상국(Other Observation, OO)로 지정함
- 작년 4월 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에 관한 스페셜 301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중국 등의 견제에 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⁸⁶⁾
 - 미 무역대표부는 중국,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 인도네시아, 러시아, 베네수엘라 총 7개국을 IP의 미국 시장 접근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PWL로 지정함
 - 특히, 미·중 경제 무역 협정(1단계 협정)에 따른 공약 이행의 진행 상황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으나, 중국의 IP 보호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고 불법 복제, 원산지 표시 등의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함

3) 기타 무역법의 관련 규정

- 「1974년 무역법」 제122조(국제수지에 관한 권한)를 통해 국제수지 문제 등으로 수입 제한이 필요한 경우 대통령이 관세 부과 등의 특별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
- 동 규정에 따라 대통령은 ①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의 해결 ② 긴급하고 심각한 달러 가치 하락 방지 ③ 국제수지 불균형의 시정을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⁸⁷⁾

86) USTR, “Special 301 Report on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Enforcement”, USTR Releases, April 25, 2024,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24/april/ustr-releases-2024-special-301-report-intellectual-property-protection-and-enforcement>, 검색일자: 2024. 12. 26.

87)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a) (19 U.S.C. § 2132);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참고

- 대통령은 수입으로 인해 국가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경우 수입 쿼터 및 15% 이내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⁸⁸⁾
 - 150일 동안 부과할 수 있으며, 150일이 경과되는 경우 의회에서 연장하지 않는 한 해당 관세는 만료됨
 - 또한 대통령은 특별 수입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잠정적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5% 이하로 관세를 인하하거나 해당 품목의 수량 및 금액의 증가 또는 수입 제한 증지를 선언할 수 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선행 조사 없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하므로 해당 규정을 통한 과세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활용하지는 않음
 - 최대 관세 부과율이 15%로 제한되어 있고, 150일 임시 부과 및 연장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고, 요건인 ‘국제 위기의 정의’에 대한 법적 소송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행하지 않음⁸⁹⁾
- 동법 제201조는 대통령의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하여 규정함
 - 제201조에 따라 대통령 직속 기구인 무역위원회(ITC)가 자국 산업에 심각한 피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물량 규제를 포함한 광범위한 세이프가드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무역위원회가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미국 내 산업이 중대한 손해나 위협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통령은 권한 내에서 미국 내 산업이 수입 경쟁에 긍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실행 가능한 조치를 취해야 함⁹⁰⁾
 - 공정한 거래라도 “미국 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경우” 긴급관세를 부과하고 특정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음⁹¹⁾
 - 무역위원회는 기관 및 이해관계자의 요청 또는 직권으로 산업 피해에 대한 조사를

88) Trade Act of 1974 Section 122(a) (19 U.S.C. § 2132);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본 참고

89) 한국은행(2024), p. 25.

90)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a) (19 U.S.C. § 2251)

91) Trade Act of 1974 Section 201(b) (19 U.S.C. § 2251)

- 개시하고 120일 이내에 판정을 내린 후 대통령에게 구제 조치를 건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은 건의 후 6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함⁹²⁾
- 대통령의 수입 제한 조치는 관세율 인상, 수입 쿼터 및 수입허가서 발급 정지 등이 있으며, 최장 5년까지 일시적인 수입 제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⁹³⁾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제201조의 조사 결과로 세탁기 수입품에 3년간, 태양광 전지와 모듈 수입품에 4년간 관세를 부과함⁹⁴⁾

□ 동법 제501조는 대통령의 '특혜(Preference) 연장 권한'에 대해 규정함

- 대통령은 제501조에 따라 수혜 개발도상국에서의 모든 적격 품목에 대해 무관세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⁹⁵⁾
- 해당 조치 시행 시 대통령은 ① 개발도상국의 수출 확대에 경제 발전에 미치는 영향 ② 다른 주요 선진국들이 해당 국가들에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세금 감면 등 유사한 혜택을 부여하는 정도 ③ 미국 내 생산자에게 미치는 영향 ④ 개발도상국의 적격 품목에 대한 경쟁력 수준을 고려해야 함⁹⁶⁾

라.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

- 「1977년 국제긴급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대통령에게 무역 등을 포함한 경제 활동을 광범위하게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
- 국가안보, 외교 정책 및 경제에 대한 '비정상적이거나 특별한 위협'이 있는 경우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언 후 재무부를 통해 즉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⁹⁷⁾
- 단, 대통령은 권한 행사 전 의회와 협의해야 하며, 의회의 투표로 국가 비상사태

92) Trade Act of 1974 Section 202 (19 U.S.C. § 2252)

93) 상동

94) Tax Foundation(2024), 검색일자: 2024. 12. 23.

95) Trade Act of 1974 Section 501 (19 U.S.C. § 2461)

96) 상동

97)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Section 202(b) (50 U.S.C. § 1701)

가 종료될 수 있음⁹⁸⁾

- 동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① 외환거래 조사·규제·금지 ② 외국 정부와 그 국민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자산 및 관련 거래에 대한 규제 등 ③ 적대국 자산 압수 등의 권한이 부여됨⁹⁹⁾
 - 대통령은 자산 동결, 금융거래 제한, 수출입 통제, 거래 금지, 기업 또는 개인의 제재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대통령이 해당 법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가비상사태’ 선언이 선행되어야 함¹⁰⁰⁾
 - ‘국가비상사태’는 1976년 제정된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NEA)」에 따르며, 해당 법은 비상사태의 선포와 해제에 대한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함¹⁰¹⁾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경우 관세 부과에 대한 엄격한 조건이 없이 대통령에게 권한을 부여하므로 보편 관세 등 부과가 유용함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선행 조사가 필요 없는 관세 부과 방안으로 해당 규정을 검토하였으나, 법적 근거 미약 및 WTO 제소 가능성 등으로 활용하지는 못함
 - 2019년 멕시코의 불법 이민 문제 미해결 시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해 5% 관세 부과를 언급했으나 협상 타결로 철회함¹⁰²⁾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이를 근거로 보편 관세를 부과하는 방침을 모색함
 -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불법 이민 문제 불법 약물 유통 등을 이유로 관세 부과를 선언하였으나 협상 타결로 부과 조치는 유예됨
 - 2024년 1월 기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69건의 국가 비상사태가 선언되었으며, 그중 39건은 현재 진행 중임¹⁰³⁾

98)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Section 204(a) (50 U.S.C. § 1703)

99)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Section 203(a) (50 U.S.C. § 1702)

100)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Section 202(a) (50 U.S.C. § 1701)

101) 유지윤(2024), p. 21.

102) 한국은행(2024), p. 25.

103) CRS,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

- 「1917년 적성국교역법(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 TWEA)」은 전시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타 국가와의 교역 및 금융거래 등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¹⁰⁴⁾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의 전신인 「적성국교역법(TWEA)」은 1917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적성국으로 규정된 국가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교역을 금지하고, 그 국가와 교역하는 상대국에도 경제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 적용함
- 대통령은 전시 동안 직접 또는 기관 지정 등을 통해 해외 거래를 조사, 규제, 금지할 수 있음¹⁰⁵⁾
 - 이후, 평시 비상사태에서의 대통령에게 대외 거래를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제정되었으며, 무역수지 악화에 대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 권한은 「1974년 무역법」에서 규정함¹⁰⁶⁾
- 닉슨 행정부는 1971년 미국의 국제수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성국교역법(TWEA)」에 근거하여 모든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일시적으로 부과하였음¹⁰⁷⁾
 - 이후 타국과 화폐 가치 재평가 협상을 마친 뒤 조치를 종료하게 되면서 실제 관세 부과 조치는 8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유지됨

CRS Report, 2024,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5618>, 검색일자: 2025. 01. 09.

104) 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 Section 8

105) 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 Section 5(a)

106) 상동

107) 상동

〈표 Ⅲ-3〉 미국 행정부 관세 부과 관련 근거법 정리

구분	발동 요건	대통령 권한	사전 조사	기한	상한
「1930년 관세법」 제338조	미국 상거래에 대한 차별 행위	관세 부과 및 수입 금지	×	×	○ (50%)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	특정 수입의 국가 안보 위협	수입 물량 조절 조치	○ (USDOC)	×	×
「1974년 무역법」 제301조 이하	교역국의 불공정 관행	① 무역 협정상 양허 혜택 정지·철회·제한, ② 관세 및 수입 제한 등	○ (USTR)	×	×
슈퍼 301조	상동	상동	×	×	×
「1974년 무역법」 제122조	국제무역수지 적자, 달러 가치 하락 등	① 관세, ② 수입 쿼터, ③ 두 가지 조치병행	×	○ (150일)	○ (15%)
「1997년 국제긴급 경제권한법」	대통령의 비상사태 선언	광범위한 경제 거래 규제	×	×	×

자료: 유지윤(2024), p. 24.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IV. 최근 미국의 관세정책

1. 트럼프 1기 행정부와 바이든 행정부의 관세정책

가. 트럼프 관세

1) 미국 우선주의 정책과 트럼프 관세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정책을 시행함
 - 2016년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 외교,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미국에 가장 유리한가”를 기준으로 하는 ‘America First(미국 우선주의)¹⁰⁸⁾’를 슬로건으로 제정함
 - 트럼프 대통령은 “일자리와 산업을 미국으로 되돌려놓는 공정한 양자 무역 협정을 체결하겠다”고 하면서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기 위해 관세 부과 및 무역 협정의 재협상을 예고함
 - 취임 직후인 2017년 1월에는 환태평양파트너십(Trans-Pacific Partnership, TPP)이 미국 경제와 주권을 파괴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탈퇴함¹⁰⁹⁾

108) ‘America First’ 정책은 미국 대통령 우드로 윌슨, 워런 G. 하딩, 도널드 트럼프가 사용한 정책 및 슬로건으로 “미국을 우선시한다”는 개념을 강조하며, 미국적 민족주의, 보호무역정책 등을 의미함(Rubino Rich, "Trump Was Not First To Use The "America First" Slogan", Huff Post, January 25, 2017, https://www.huffpost.com/entry/the-etymology-of-america-first_b_5889767de4b0628ad613de3f, 검색일자: 2024. 01. 06.)

109)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Memorandum Regarding Withdrawal of the United States from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Negotiations and Agreement”, January 23, 2017., 검색일자: 2024. 01. 09.

- 또한 캐나다·멕시코와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 2017년 5월 재협상 의사를 미 의회에 통보한 것을 시작으로 총 7차 공식 협상을 거쳐 타결하였으며, 이후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이 출범하였음¹¹⁰⁾
 - NAFTA는 2018년 8월 미국-멕시코 양자 간 협상을 거쳐, 9월 캐나다와도 극적 합의하며 타결되었고,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대로 북미 3국이 NAFTA를 개정하여 새롭게 USMCA를 추진, 2020년 7월부터 발효되었음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미국의 생산자 보호 및 불공정 무역 해결이라는 명목으로 다음의 주요 법률을 통해 특정 국가 및 품목에 고율 관세, 일명 ‘트럼프 관세(Trump Tariff)’를 부과함
 - 트럼프 관세를 본격적으로 부과한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약 3,800억달러 규모의 철강, 알루미늄, 세탁기, 태양광 패널, 중국산 제품 등에 여러 차례 고율 관세를 적용함으로써 약 800억달러 상당의 세금이 증가하였음¹¹¹⁾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대부분 유지하였으나,¹¹²⁾ 2024년 5월 추가로 반도체와 전기자동차를 포함한 18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함

〈표 IV-1〉 트럼프 1기 주요 관세 전쟁의 타임라인

관련 법령	대상	내용
「무역확장법」 제232조	철강 및 알루미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3월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 2019년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알루미늄 관세 철폐 발표 · 2020년 관세 범위 확대(특정 파생 제품 포함)
「무역법」 제201조	태양광 제품 및 세탁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1월 태양광(15~30%), 세탁기(16~50%) 관세 부과 · 2021년 세탁기 관세 연장(2023년 2월)했으나 현재 만료함

110) 원유정 외(KOTRA 통상지원팀),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8-027, KOTRA, 2018. p. 1.

111) Tax Foundation(2024), 검색일자: 2025. 01. 20.

112) 바이든 행정부는 EU 수입품에 대한 특정 관세를 중단하고 EU와 영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과 일본의 철강 수입에 대한 관세를 할당량(TQR)로 대체하고,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2년 연장 후 만료시킨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를 유지함(Tax Foundation, 2024.)

〈표 IV-1〉의 계속

관련 법령	대상	내용
무역법 제301조	중국산 수입 물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7월: 1단계 관세(340억달러) · 2018년 8월: 2단계 관세(160억달러) · 2018년 9월: 3단계 관세(2,000억달러) · 2019년 9월: 4단계 관세(3,000억달러)

자료: Tax Foundation(2024). 검색일자: 2025. 01. 20.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2)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 국가안보를 이유로 「1962년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하여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면세를 철폐하고 관세를 부과함
 - 상무부는 2017년 4월 조사 개시 후, 2018년 1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음
 - 이에 따라 2018년 3월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부과함
 - 단, 한국 및 호주, 아르헨티나, 브라질은 예외 조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면제되었으며 캐나다, 멕시코, EU도 면제 대상이었으나 5월 발표 이후 관세 적용
 - 대신 브라질산과 한국산 철강 수입(연간 268만톤 할당) 및 아르헨티나산 철강-알루미늄 수입에 쿼터제를 적용함¹¹³⁾
 - 2019년 캐나다와 멕시코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철폐함
 - 2020년 특정 파생 제품을 포함하도록 철강 및 알루미늄의 관세 범위를 확대했으며, 다시 캐나다산 알루미늄 수입에 관세를 재부과한다고 발표하였으나, 한 달 후 재부과된 관세를 철폐하였음
 -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추가 관세 철폐 조건으로 EU, 일본, 영국 등과 저울할당 관세 방식(TRQ)을 적용하는 데 합의함

113) 산업통상자원부, 「미 철강 관세 한국 면제...한-미 FTA 개정도 합의」, 2018. 03. 26.,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8764a1224/155116584/view?mno=&pageIndex=208&rowPageC=0&displayAuthor=&searchCategory=0&schClear=on&startDtD=&endDtD=&searchCondition=1&searchKeyword=>, 검색일자: 2025. 01. 06.

〈표 IV-2〉 제232조 국가별 예외 조치 운영 현황

면제	구분		쿼터			저율관세할당(TRQ)		
			한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EU	일본	영국
멕시코, 캐나다, 호주	쿼터량 (t)	철강	263만	419만	18만	330만	125만	50만
		알루미늄	-	-	18만		-	2.2만
	시행일		2018년 1월(소급 적용)			2022년 1월	2022년 4월	2022년 6월

자료: 한아름, 「美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조치 강화」, 『통상이슈브리프』, KITA, 2020, p. 1.

□ 제232조의 관세에 대해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은 추가 관세 등을 부과하며 부정적으로 대응함

- 2022년 12월 WTO는 중국, EU, 캐나다, 멕시코 등이 제기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고율 관세에 관한 소송에 대해 무역 규정 위반으로 판결함
 - 캐나다, 중국, EU, 인도, 멕시코, 노르웨이, 러시아, 스위스, 튀르키예 등 9개국은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를 세이프가드¹¹⁴⁾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WTO에 제소함
 - WTO는 미국이 예외를 주장할 만한 국가안보 비상사태가 없다는 의견이었으나,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결정을 비난하고 관세 철폐를 거부함¹¹⁵⁾
- 또한 EU,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은 제232조 관세에 대응하여 즉시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등의 보복 조치를 시행함¹¹⁶⁾
 - EU는 2018년 6월 철강, 알루미늄, 옥수수, 위스키, 세탁기, 화장품 등 총 30억달

114)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에 해당하는 경우 WTO는 규제 피해국이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미국은 WTO에서 인정하는 「GATT」 제21조의 “일방 국가가 국가안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 차별적 무역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규정”인 ‘국가안보 예외(National Security Exemption)’에 따른 것으로 주장함(KOTRA, 「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 2018,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_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 sSn=244&pNttSn=167455, 검색일자: 2025. 01. 20.)

115) BBC, “WTO says Trump's US steel tariffs broke global trade rules”, December 10, 2022, <https://www.bbc.com/news/business-63920063>, 검색일자: 2024. 12. 09.

116) Marin Weaver, *Section 232 and 301 Trade Action in 2018*, USITC, 2018, https://www.usitc.gov/research_and_analysis/tradeshifts/2018/section_232_and_301_trade_actions_in_2018.pdf, 검색일자: 2025. 01. 20.

- 러 상당의 미국 상품 154종에 25% 관세를 부과함
- 멕시코는 2018년 6월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등 208종에 대해 5~25% 관세를, 7월에는 돼지고기 및 치즈 제품에 10~15%의 임시 관세를 부과하였고, 2019년 5월부터 미국과 협의 후 추가 관세를 폐지함
- 캐나다는 2018년 7월 철강, 위스키 등을 포함한 231종에 대해 미국과 동일 수준의 추가 관세(철강 25%, 기타 10%)를 부과하였으나, 2019년 5월 미국과 협의 후 해제함
- 중국은 2018년 4월부터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을 포함한 128개 품목에 15~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음

3)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관세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세이프가드와 관련한 「1974년 무역법」 제201조를 근거로 세탁기 및 태양광 패널 등에 고율 관세를 부과함
 - 무역위원회(ITC)는 2017년 5월 해당 물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11월 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1월 무역 조치를 발표함
 -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미국을 제외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태양광 셀·모듈(15~30%), 세탁기(16~50%)에 TRQ(저율관세할당)¹¹⁷⁾에 따라 관세를 부과함¹¹⁸⁾
 - 한국도 세탁기와 태양광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하였음
 - 2021년 세탁기에 대한 관세를 2023년 2월까지 연장하였으나, 현재는 만료됨
 - 2022년 바이든 행정부는 태양광 패널 관세(15%)를 4년간 연장하였으나, 2022년부터 태양광 패널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동남아시아 4개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2년간 일시적 면제를 제공함

117) 일정 할당량 이하인 경우는 관세를 면제하는 쿼터제를 의미함

118) USTR, "President Trump Approves Relief for U.S. Washing Machine and Solar Cell Manufacturers", January 22, 2018, <https://ustr.gov/about-us/policy-offices/press-office/press-releases/2018/january/president-trump-approves-relief-us>, 검색일자: 2024. 12. 09.

- 2024년 바이든 행정부는 양면 태양광 패널에 대한 별도 면세를 철폐하였고 2년 임시 면세도 만료되어, 추가 관세 부과를 위해 동남아시아 4개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에 대한 재조사를 지시함

〈표 Ⅳ-3〉 미국의 태양광 제품 및 세탁기의 세이프가드

구분	기존 관세율	세이프가드 관세율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태양광 모듈	0%	-	30%	25%	20%	15%	-
태양광 셀	0%	저율 관세	0%	0%	0%	0%	-
		쿼터	2.5GW				-
		초과 시	30%	25%	20%	15%	-
세탁기 완제품	1%(0.3%)	저율 관세	20%	18%	16%	15%	16%
		쿼터	120만대				-
		초과 시	50%	45%	40%	35%	30%
세탁기 부품	2.6%(0.7%)	저율 관세	0%	0%	0%	0%	0%
		쿼터	5만대	7만대	9만대	10만대	13만대
		초과 시	50%	45%	40%	35%	30%

자료: USTR(2018), 김경화(2024) p. 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나. 미·중 무역 전쟁

1) 미·중 무역 전쟁의 배경

- 미·중 무역 전쟁도 ‘트럼프 관세’의 일환으로,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 해소를 위한 대중 관세정책에서 발단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출범 후 자국에 손해라고 판단되는 모든 기구와 협정을 재정비 하였으며, 2018년부터 중국에 대한 본격적인 관세정책을 시행함
 - 중국은 신중국 수립 이후 1979년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면서 2018년 기준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약 4,193억달러를 기록함¹¹⁹⁾

119) 고병창·오길용,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 『지역발전연구』, 제16권 제1호, 2019, pp. 59~85.

- 또한 중국이 2001년 WTO에 가입 후 수출 및 제조업으로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여 2018년 기준 경제 규모가 미국의 70% 수준까지 이르면서 미국은 중국의 경제적 부상을 자국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하고 견제함¹²⁰⁾
- 여기에 대중 무역 적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무역 적자의 원인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 행위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며 「1974년 무역법」 제301조(불공정 관행)의 조사를 지시하였고, 몇 차례 협상 끝에 2018년 양국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됨

〈표 IV-4〉 미국의 대중국 상품 무역(1980~2017)

(단위: 10억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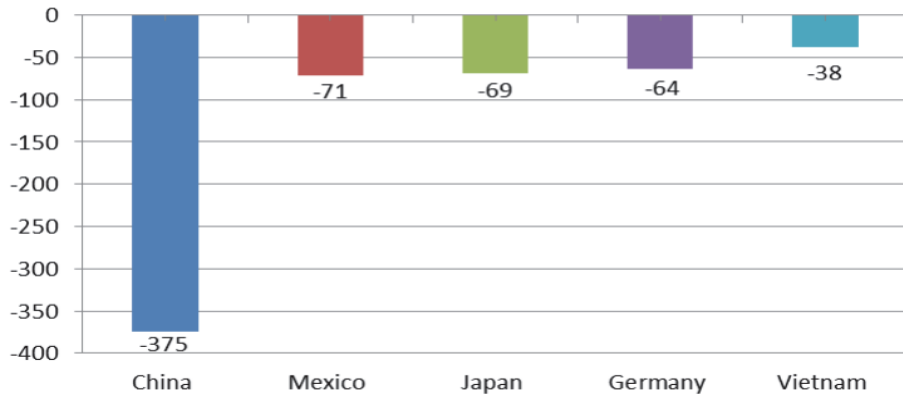
연도	미국 수출	미국 수입	미국 무역수지
1980	3.8	1.1	+2.7
1990	4.8	15.2	-10.4
2000	16.3	100.1	-83.8
2010	91.9	365.0	-273.0
2011	104.1	399.4	-295.3
2012	110.5	425.6	-315.1
2013	121.7	440.4	-318.7
2014	123.7	468.5	-344.8
2015	115.9	483.2	-367.3
2016	115.6	462.6	-347.0
2017	130.4	505.6	-375.2

자료: Sutter and Sutherland, China-U.S. Trade Issue, CRS Report, 2018, p. 2.

120) 상동

[그림 IV-1] 2017년 미국 주요국의 무역 불균형

(단위: 10억달러)



자료: Sutter and Sutherland(2018), p. 2.

2)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과정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조항인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따라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함
 - 2017년 8월 무역대표부의 조사 개시부터 2018년 7월 첫 발표까지 11개월이 소요되었으며, 14개월간 4단계에 걸쳐 관세 부과 규모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실행됨¹²¹⁾
 - 2017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대표부에 ‘미국의 지식재산권 또는 기술 개발 등을 해칠 수 있는 중국의 정책 또는 관행’에 대한 조사를 지시함
 - 2018년 3월 무역대표부는 “해당 국가의 행위, 정책 또는 관행이 부당하거나 차별적이며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주거나 제한한다”는 보고서를 전달함에 따라 특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¹²²⁾
 -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4월 1,300개 품목에 대해 제301조에 대한 초기 관세 리스트를 발표함¹²³⁾

121) 한국은행 뉴욕사무소(2024), p. 24.

122) USITC(2018)

123) 상동

- 이에 따른 보복 조치로 중국은 대두 등 106개 품목에 25% 추가 관세 부과를 계획함
- 2018년 제301조 관세가 부과된 중국산 수입 품목은 약 11,100개로, HTS 8자리 하위 품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함¹²⁴⁾
 - 1단계는 주로 첨단 기술 및 기계가 포함되었으며, 2단계는 플라스틱 제품과 첨단 기술 및 기계 제품을 추가하였고, 3단계는 농업, 광물, 화학, 섬유, 목재, 유리, 금속, 가구 등이 추가로 포함됨
 - 중국도 2018년에 부과한 약 1,100억달러 규모의 6,085개 품목에 추가 관세를 부과함
 - 2018년 12월 G20 정상회의에서 양국은 추가 관세 부과 유예에 합의하고 협상을 진행하기로 하였으나, 이후 무역 협상이 결렬되면서 사태는 악화됨
- 2019년 6월,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9월에 부과한 기존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10% 관세를 25%로 인상함¹²⁵⁾
 - 중국도 2018년 부과한 600억달러 규모에 대한 관세를 일부 25%로 인상함

〈표 IV-5〉 미·중 간 상호 관세 부과 조치 과정

구분	발효 시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1차	2018. 07. 06.	340억달러(818개 품목) 25% 부과	340억달러(545개 품목) 25% 부과
2차	2018. 08. 23.	160억달러(284개 품목) 25% 부과	160억달러(333개 품목) 25% 부과
3차	2018. 09. 24.	2,000억달러(5,733개 품목) 10% 부과	600억달러(5,207개 품목) 5~10% 부과
4차	2019. 05. 10. ~06. 01.	상기 2,000억달러(5,745개 수정) 10% → 25% 인상	상기 600억달러(5,207개 품목) 5~10% → 5~25%로 인상
	2019. 09. 01. (그룹 1)	1,120억달러 15% 부과	1,717개 품목 5~10% 부과
	2019. 12. 15. (그룹 2)	1,600억달러 15% 부과 예정	1,815개 품목 5~10% 부과 예정

124) USITC(2018)

125) 상동

〈표 IV-5〉의 계속

구분	발효 시점	미국의 대중 관세 부과	중국의 대미 관세 부과
협상	2019. 12. 13.	1단계 무역 협상 타결(2020. 1. 15 서명)	
	2020. 02. 14.	1단계 무역 협상 발효	

주: 품목은 HTS 8자리 기준이며, 3단계·4단계는 전체 및 부분 관세 품목을 포함하고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미 무역대표부가 최종 발표한 품목 수를 반영함

자료: USTIC(2018); 문병기 외, 「미·중 무역 분쟁의 수출 영향」, 『TRADE FOCUS』, 2019년 제24호, 한국무역협회, 2019, p. 1; 김동수 외, 「미·중 갈등 대응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 총서』, 22-30-01, 2022, p. 10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2020년 1월 15일 미국과 중국은 미·중 1단계 무역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2월 14일 부터 발효되면서 ‘미·중 1차 무역 전쟁’은 종결되었음
- 2019년 10월, 미국에서의 제13차 협상에서 미국과 중국은 부분적 합의인 미니달 (1단계 합의)을 도출하였으며, 2020년 1월 15일 합의문에 서명함¹²⁶⁾
 - 1단계 합의에 따라 중국은 지재권, 기술 이전, 금융서비스, 환율정책 등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 개혁을 시행하고, 향후 2년에 걸쳐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추가 구매하기로 함
 - 이에 대해 미국은 1,560억달러 규모의 수입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을 철회하였고, 기존 1,100억달러 규모 수입품에 부과하던 15% 추가 관세는 7.5%로 인하하였으며,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대해 25%에서 30%로 인상하기로 했던 조치를 중단하고 25% 관세율을 유지함
 - 다만, 중국은 미국 농산물 500억달러 구매를 약속하였으나, 양국 간 갈등의 주요 쟁점이었던 지식재산권 침해 및 기술 강제 이전 등에 대한 내용은 제외되어 갈등이 이어짐
- 또한 WTO는 중국의 미국 관세에 대한 제소를 “미국의 대중 관세가 국제무역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정함
 - WTO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중국에만 한정되며, 적절한 사유 없이 미국이 동의한 최고 금리를 초과하였으므로 WTO 규정을 위배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126) 산업통상자원부, 『2023 외국의 통상환경-무역장벽 보고서-』, 2023, p. 34.

미국은 “WTO가 중국의 유해 기술 관행을 막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비판함¹²⁷⁾

□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에도 미·중 간의 무역 관계는 정치, 경제, 국가안보 등 다양한 원인으로 갈등이 지속됨

- 2021년 10월, 캐서린 타이(Katherine Chi Tai) 무역대표부 대표는 중국이 1단계 합의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중국 통상 당국과 논의할 것이며 보조금, 지식재산권 침해 등 비상식적 경제 관행에 대한 우려를 중국 측에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고 밝힘¹²⁸⁾
- 2022년 3월, 무역대표부는 관세 예외 조치 검토를 거쳐 2021년 10월 만료된 549개 품목에 대한 예외 조치 중 352개 품목(펌프, 컴프레서, 필터, 밸브 등 산업용 부품 및 제품)에 대해 2022년 말까지 소급 적용하여 관세를 면제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추가 연장을 거쳐 2023년 말까지 연장됨¹²⁹⁾
- 2022년 9월 무역대표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대중 제301조 관세 전반에 대한 검토’에 대한 의견 수렴의 결과를 바탕으로 1차, 2차 관세 조치 유지를 결정함
- 2023년 12월 무역대표부는 2023년 말 종료 예정이었던 352개 중국산 관세 면제 품목과 별도 면제 중이었던 77개 중국산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한 면세 조치를 2023년 5월까지 연장하기로 함
- 2024년 9월 제301조 대중국 관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함
 - 약 2년간의 검토 끝에 기존 관세 조치는 연장하고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과학법」 등 산업보조금 정책을 통해 육성하고 있는 전기차, 태양광, 반도체 등 전략 분야를 선별하여 관세를 대폭 인상함¹³⁰⁾
 - 업계 의견을 일부 수렴하여 코로나19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율 등을 수정하였으며, 전기오토바이 및 전기자전거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함¹³¹⁾

127) BBC, “US China tariffs 'inconsistent' with trade rules says WTO”, September 16, 2020, <https://www.bbc.com/news/business-54168419>, 검색일자: 2024. 12. 13.

128) 산업통상자원부(2023), p. 35.

129) 상동

130) 이유진·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KITA 통상리포트』 Vol. 10, 한국무역협회, 2024. p. 18.

〈표 IV-6〉 제301조 대중국 수입 물품의 관세 인상

품목	HS Code	301조 관세율		적용 시점	
		기존	인상		
철강 및 알루미늄	7206.10.00 등 321개 품목	0~7.5%	25%	2024	
반도체	8541.10.00 등 16개 품목	25%	50%	2025	
전기차	전기차	8702.40.31 등 8개 품목	25%	100%	2024
	전기차용 배터리	8507.60.0010	7.5%	25%	2024
	비전기차용 배터리	8507.60.0020	7.5%	25%	2026
	배터리 부품	8507.90.40	7.5%	25%	2024
	천연 흑연	2504.10.10. 등 3개 품목	-	25%	2026
	영구 자석	8505.11.00	-	25%	2026
	기타 광물	2602.00.00 등 26개 품목	-	25%	2024
태양 전지 (모듈 조립 여부 불분)	8541.42.00 등 2개 품목	25%	50%	2024	
항만 크레인	8426.19.00	-	25%	2024	
코로나	의료용 장갑	4015.12.10	7.5%	50%	2025
			7.5%	100%	2026
관련	의료용 마스크	6307.90. 9842 등 5개 품목	7.5%	25%	2024
			7.5%	50%	2026
	주사기 및 바늘	9018.31.00 등 2개 품목	0%	100%	2024 *영유아용 1년 유예

자료: USTR, "Section 301 Modifications Determination", 2024. 09. 12. [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Modifications%20Determination%20FRN%20\(Sept%2012%202024\)%20\(FINAL\).pdf](https://ustr.gov/sites/default/files/Section%20301%20Modifications%20Determination%20FRN%20(Sept%2012%202024)%20(FINAL).pdf); 박명서(2024), p. 2, 이유진·한아름(2024), p. 18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3)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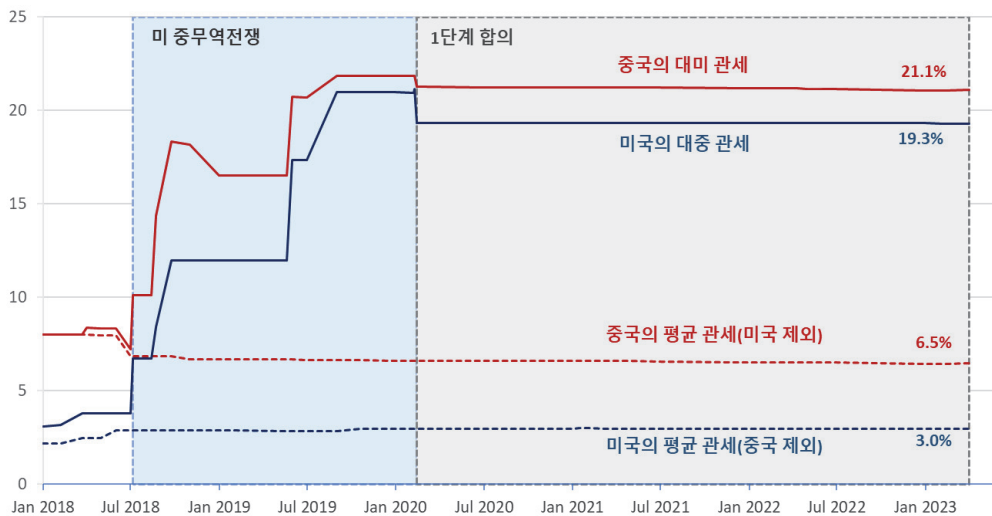
□ 2021년 미국의 전체 수입 평균 관세율은 3%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집권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중국의 관세는 3%에서 19%대로 급증함¹³²⁾

131) 박명서, 「미 무역대표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최종안 발표」, KITA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2024. p. 1.

- 미·중 무역 전쟁 초기에는 미·중 간 양자 관세는 평균 17%까지 증가했으며, 2020년 1월에 체결된 1단계 합의에 따라 16%로 미세하게 낮아졌음

[그림 IV-2] 미·중 무역 전쟁 이후 관세의 변화

(단위: %)



자료: C.P. Bown, “US-China Trade War Tariffs : An Up-to-Date Chart”, PIIE, April 6, 2023.,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2019/us-china-trade-war-tariffs-date-chart>, 검색일자: 2025. 01. 13.

- 대다수의 연구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중 관세정책에 대해 결과적으로는 의도했던 경제적, 외교적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평가함¹³³⁾
- 실질적으로는 제301조 관세 부과 후 미·중 간 무역은 상당히 감소하였음
 - 미국 내 중국의 수입 시장 점유율은 20년 동안 가파르게 증가하며 2017년 22%에 이르렀으나, 제301조 관세 부과 후인 2018년 7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기 시작함¹³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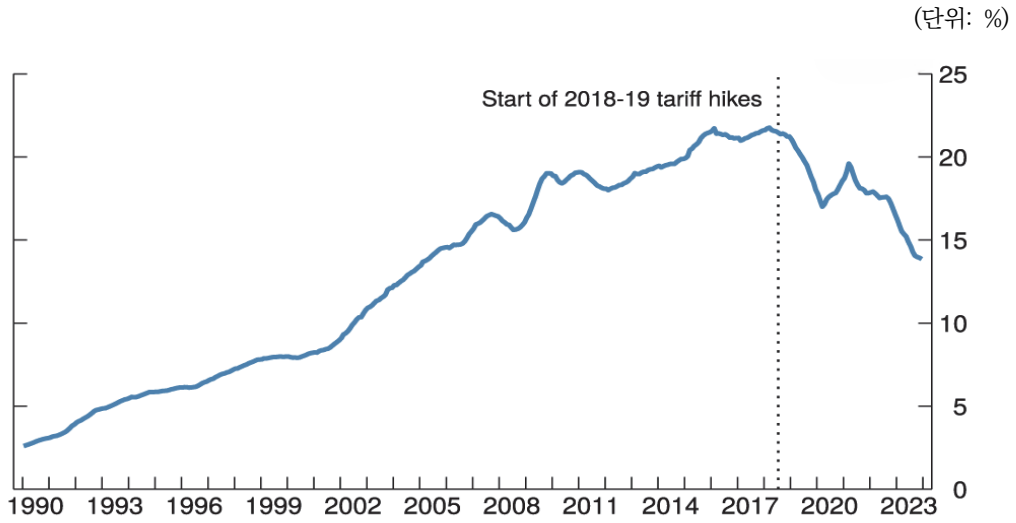
132) 이유진·한아름(2024), p. 3.

133) 박성준(2024), p. 7.

134) Haberkorn et al., “Global trade patterns in the wake of the 2018-2019 U.S.-China tariff hikes”, FEDS Note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pril 12, 2024,

- 2023년 중국의 수입 점유율은 약 14%로 200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그림 IV-3] 미국 내 중국 수입 점유율의 변화



자료: Haberkorn et al.(2024)

- 하지만 중국산 수입 감소는 제3국으로의 무역 전환으로 이어지며 글로벌 가치 사슬을 재편함
 - 미국이 해당 품목을 자국에서 생산하기보다 베트남, 한국 등 제3국을 통하여 수입 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중국과 공급망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¹³⁵⁾
 - 관세 부과 품목의 경우 미국 내 중국의 수입 비중은 다른 수출국 대비 감소하였으나, 비관세 품목의 경우 2022년 중국의 수입 비중과 다른 수출국의 수입 비중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함
 - 즉, 미국의 대중 무역 적자는 개선되었으나 전체 무역수지는 악화됨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global-trade-patterns-in-the-wake-of-the-2018-2019-u-s-china-tariff-hikes-20240412.html>, 검색일자: 2025. 01. 13.
 135) 박성준(2024), p. 7.

〈표 IV-7〉 주요 교역상대국별 미국 수입액의 백분율 변화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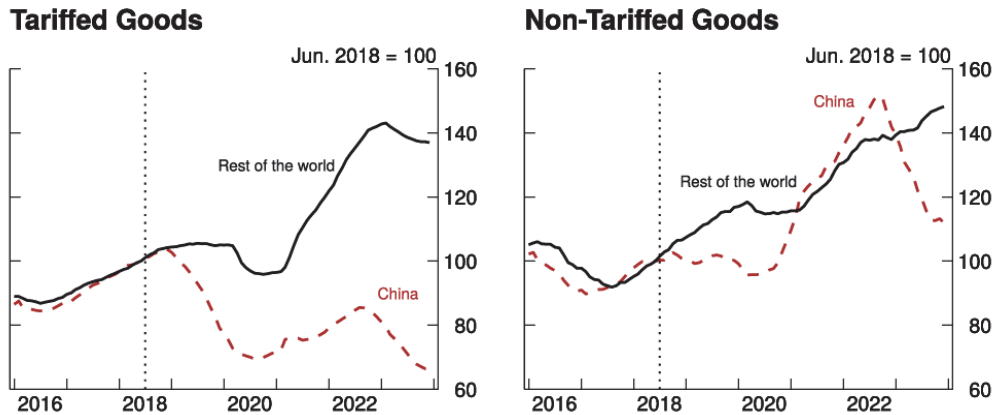
수입국	2017-18	2018-19	2019-20	2020-21	2021-22	2018-22	2022-23
중국	6.6	-16.6	-3.7	16.7	6.3	▼-0.3	-20.3
멕시코	9.9	3.6	-9.1	18.9	18.3	▲32.4	4.6
캐나다	6.5	0.0	-15.2	32.5	22.3	▲37.4	-3.5
일본	7.0	1.0	-16.8	12.8	10.0	▲4.3	-0.5
독일	4.3	1.4	-9.8	17.7	8.4	▲16.6	8.9
베트남	5.7	35.2	19.7	28.1	25.1	▲159.5	-10.2
한국	4.0	4.4	-1.9	24.9	21.5	▲55.4	0.7
대만	11.7	18.6	11.4	27.5	19.2	▲100.9	-4.3
인도	14.2	6.7	-11.5	42.9	17.1	▲57.9	-2.1
아일랜드	17.6	7.7	6.7	11.6	11.3	▲42.8	-0.3

주: 수입액은 미국 세관 신고 가격 기준

자료: USITC, https://www.usitc.gov/research_and_analysis/tradeshifts/2022/us_trade_industry_sectors_and_selected_trading, 검색일자: 2025. 01. 1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그림 IV-4] 대중 관세 적용 여부에 따른 수입 비중 변화

(단위: 100, 2018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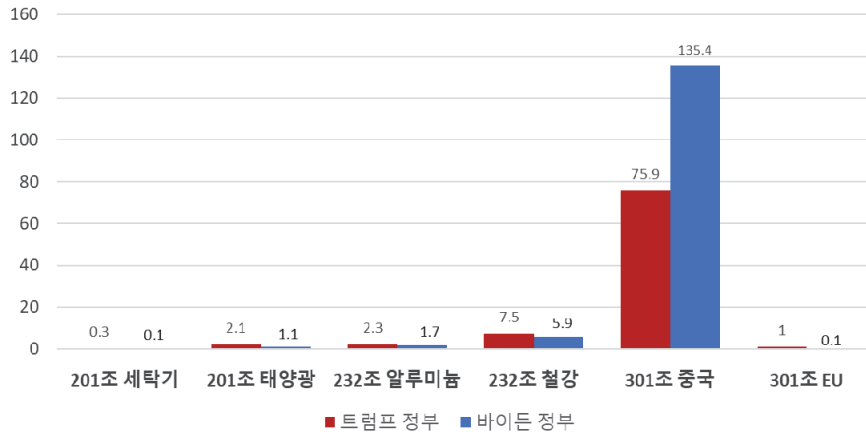


자료: Haberkorn et al.(2024)

- 무역 전쟁 관세로 인해 2024년 3월 기준 미국 수입자(소비자)로부터 징수한 세금은 2,330억달러 이상임¹³⁶⁾
- 총액 중 890억달러(약 38%)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징수되었고, 나머지 1,440억달러(약 62%)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징수됨
 - 특히, 제301조 대 중국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759억달러, 바이든 정부에서는 1,354억달러로, 무역 전쟁으로 징수된 관세의 약 90%를 차지함
 - 제201조에 따른 세탁기 관세의 경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3억달러, 바이든 행정부에서 1억달러를, 태양광의 경우 각각 21억달러, 17억달러를 징수함
 - 제232조의 알루미늄 관세는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3억달러, 바이든 행정부가 17억달러를, 철강 관세는 각각 75억달러, 59억달러를 징수함
 - 추가로 제301조에 따라 EU 제품에도 관세를 징수하였는데 트럼프 1기 행정부는 10억달러를, 바이든 행정부는 1억달러를 징수하였음

[그림 IV-5] 무역 전쟁으로 부과된 관세

(단위: 10억달러)



자료: Tax Foundation(2025), 검색일자: 2025. 02. 03.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136) Tax Foundation, "Trump Tariff: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ump Trade War", January 31, 2025,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검색일자: 2025. 02. 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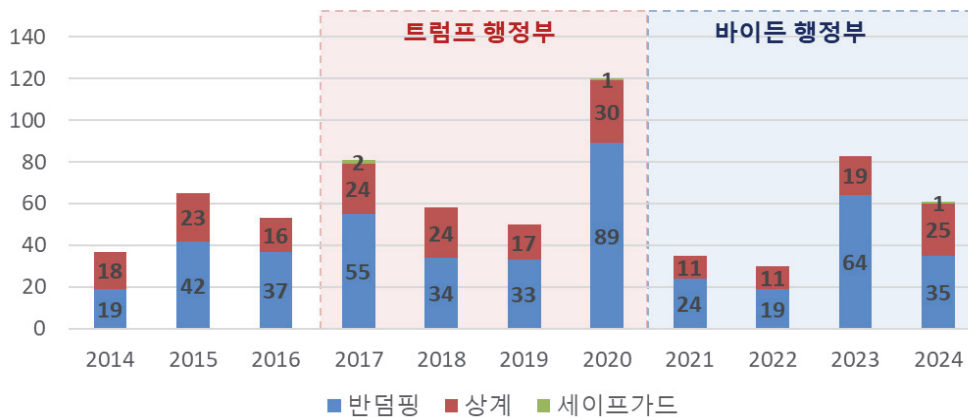
다. 무역구제조치 규정 강화

□ 덤핑 및 상계 관세 등과 관련한 수입 규제 및 신규 조사가 급증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인 2020년 기준 반덤핑 조사는 89건, 상계 관세 조사는 30건, 세이프가드 조사는 1건으로 총 120건이 시행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함
- 바이든 행정부 집권 이후 수입 규제 신규 조사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23년 하반기부터 다시 급격하게 증가함¹³⁷⁾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에 적용 중인 미국의 반덤핑 규제는 총 36건(2위)으로 철강(25건)과 플라스틱·고무 제품(4건), 화학제품(3건)을 중심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상계 관세는 총 10건(4위), 세이프가드는 결정질 실리콘 태양전지에 대한 조치 1건임¹³⁸⁾

[그림 IV-6] 미국의 신규 수입 규제 개시 건수 추이

(단위: 건)



자료: WTO Trade Remedies Data Portal, <https://trade-remedies.wto.org/en>, 검색일자: 2025. 02. 03.; 이유진·한아름(2024), p. 4.를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137) 이유진·한아름(2024), p. 4.

138) 산업통상자원부(2023), p. 17.

- 2024년에는 수입 규제와 관련한 규정이 대폭 개정됨에 따라 상무부의 반덤핑 및 상계 관세 판정이 용이해졌고, 조사 대상 기업에 덤핑 및 상계 관세율이 더 높게 부과될 우려가 있음¹³⁹⁾
- 상무부는 4월 「반덤핑 및 상계 관세법의 관리를 통한 무역구제 집행의 개선 및 강화 규칙(Regulation Improving and Strengthening the Enforcement of Trade Remedies Through the Administration of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의 개정안을 발효함
- 또한 2015년 통과한 「무역특혜연장법(Trade Preference Extension Act of 2015, TPEA)」상 ‘불리한 가용정보(Adverse, Facts Available, AFA)’의 사용 권한을 강화함에 따라 조사 대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거부하고 이용가능한 불리한 정보로 높은 덤핑률을 적용할 수 있게됨¹⁴⁰⁾
 - 특히, 「무역특혜연장법(TPEA)」의 제504조의 반덤핑 관세 산정 시 정상가격(normal value) 계산에 대한 ‘특별한 시장 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 PMS)’ 규정을 구체화하여 상무부의 PMS 판정 재량권을 확대하였고, 이를 적용하여 고율의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어 반덤핑 피제조 기업에 어려움이 가중됨¹⁴¹⁾

2.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

- 4년 만에 재임성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2025년 1월 20일 취임 직후 다시 한번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 행정명령에 서명함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추진한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경제성장과 인플레이션 감소,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무역 적자 해소 등을 촉진하였다고 주장하며, 2기 행정

139) 이유진·한아름(2024), p. 5.

140) 산업통상자원부(2023), p. 14.

141) 상동

부에서도 해당 정책을 이어나갈 것을 표명함

-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기간 동안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슬로건하에 ‘Agenda 47’을 통해 강력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예고한 바 있음

〈표 IV-8〉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최우선 정책 과제 내용

구분	내용
안전한 미국 재건 (Make America Safe Ag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 보안 강화: ‘catch-and release’ 정책 종료, 국경 장벽 건설, 불법 이민자 망명 종료, 범죄 피난처 단속, 외국인 심사 강화 · 외국인 범죄자 추방 · 난민 재정착 프로그램 중단 · 군대(주 방위군 포함) 배치를 통한 국경 수비 · 마약 카르텔을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 제거할 법안 마련 · 사형 등 극악범죄 엄중 처벌 확대
에너지 강국 및 경제 회복 (Make America Affordable and Energy Dominant Agai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든의 기후 정책 종식, 허가 절차 간소화, 에너지 개발 규제 폐지 · 자동차, 샤워기, 전자제품 등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에너지 비상사태 선포 · 원자력발전소 등 인프라 확대, 대규모 풍력 발전소 프로젝트 종식 · 파리 기후 협정 탈퇴 · 생활비 절감 비상조치 ·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발표 · 미국 기업에 부당한 외국 세금 정책 등에 강력 대응
정부 개혁 및 부패 청산 (Drain The Swam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관료제 개혁 및 불필요한 고용 중단 · 불필요한 규제 등 철회 · 정부 서비스 개선 및 재택 공무원 복귀(6%만 현장 근무 중임) · 정부의 정치 무기화 종식 · 정부의 위험적 검열 종료 · 미국 우선주의 외교 정책 시행
미국의 가치 회복 (Bring Back American Val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물학적 성별의 현실 인정 및 여성 권리 보호 · 미국 역사를 기리는 랜드마크 명명

자료: The White House, “President Trump’s America First Priorities”, January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20briefings-statements/2025/01/president-trumps-america-first-priorities/>, 검색일자: 2025. 02. 03.

-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은 불공정하고 불균형한 무역의 해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주 내용은 다음과 같음¹⁴²⁾
 - 상무부 장관 등은 무역 적자 원인과 국가안보 영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 관세(global supplemental tariff)¹⁴³⁾’ 등의 조치를 권고해야 함
 - 무역대표부 등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검토하고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권고해야 하며,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301조 조사 보고서(2024년 5월 24일자)’를 평가하고, USMCA 및 기존의 무역 협정에 필요한 개정안을 검토해야 함
 - 상무부 장관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적용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을 검토하고 규제 강화 수단을 마련해야 하며, 제232조에 따른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한 경우 절차 수정 및 위험 완화를 위한 조정을 고려해야 함
 - 재무부는 외국 정부의 차별적 또는 불공정한 역외 조세 관행을 조사하고 대응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WTO 조달 협정을 포함한 모든 무역 협정에서 미국의 권익이 충실히 반영되는지 확인해야 함

-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국세청(IRS)의 기능을 대외무역에도 적용하여 관세를 전담 관리하는 기관인 ‘대외수입청(External Revenue Service, ERS)’ 신설을 발표함
 - 이에 재무부 장관 등은 관세 및 기타 무역 관련 수입을 징수하는 대외수입청(ERS) 구축의 타당성 등을 조사, 수립해야 함

- 또한 800달러 미만의 소액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Rules)’을 재검토할 예정임
 - 재무부 장관 등은 미화 800달러 미만의 소액 면세 수입 특혜로 세수 손실과 이를 악용한 불법 수입 방지를 위한 제도 개정안을 보고하고 지시해야 함
 - 최근 판매 실적이 급등한 테무 등 중국 온라인 유통업체에 대한 조치임

142) The White House, “Presidential Action: America First Trade Policy”, January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1/america-first-trade-policy/>, 검색일자: 2025. 01. 21.

143) 언론은 ‘보편 관세(Universal Tariff)’로 유추함(이정민,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KOTRA 경제통상리포트』, US25-01, KOTRA, 2025, p. 2.)

가. 상호 관세 부과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 ‘Agenda 47’에서 다른 나라에 대한 무역 의존도를 줄이는 방법으로 「미국 상호무역법(U.S. Reciprocal Trade Act, USRTA)」을 발표하였음
 - 「미국 상호무역법」은 미국이 부과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의 관세율 또는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복 조치를 부과하는 방침임
 - 상호 관세 조치는 교역 국가 간 서로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국가별 관세 격차를 줄이고 불공정한 무역 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원칙적인 목적임
 - 트럼프 1기였던 2019년 당시 공화당에 의해 「미국 상호무역법」이 발의¹⁴⁴⁾되었으나 최종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음¹⁴⁵⁾
 -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미국의 관세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불균형 관세정책으로 인해 미국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함¹⁴⁶⁾
- 2025년 2월 13일, 트럼프 대통령은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는 각서인 「상호 무역 및 관세(Reciprocal Trade and Tariff)」에 서명함¹⁴⁷⁾
 -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수준과 동일한 수준의 관세를 부과할 방침임
 - 취임 초기에 보편 관세를 주장해 오던 것과 달리 상호 관세에 집중하는 것은 보편

144) U.S. Congress, “H.R.764-United States Reciprocal Trade Act”, January 24, 2019,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64>, 검색일자: 2024. 11. 14.

145) 보수 진영인 헤리티지 재단도 「상호무역법」을 통해 무역장벽이 높아지면 실제로 미국인이 비용을 부담하므로 보호무역정책은 미국 내 개인과 기업 모두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비판함(The heritage Foundation, “Why the Reciprocal Trade Act’s Tit-for-Tat Tariffs Aren’t a Good Idea”, February 26, 2019)

146) TRUMP Camp, “Agenda 47: Cementing Fair and Reciprocal Trade with the Trump Reciprocal Trade Act”, June 21, 2023, <https://www.donaldjtrump.com/agenda47/>, 검색일자: 2024. 11. 14.

147) The White House,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February 13, 2025,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reciprocal-trade-and-tariffs/>, 검색일자: 2025. 02. 17.

관세가 전 세계, 전 품목을 대상으로 하여 협상이 어려운 반면, 상호 관세는 양자 간 협상이 수월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 무역 및 관세」 행정명령을 통해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고려하여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를 부과할 것이라고 표명함
- (배경) 미국은 가장 개방적인 경제이자 가장 낮은 평균 관세율을 부과함에도 무역 상대국으로부터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으므로 이에 따른 무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임¹⁴⁸⁾
 - EU는 수입차에 10% 관세를 부과하나 미국은 2.5%만 부과한다고 언급함
 - 캐나다, 프랑스 등은 미국 기업에 디지털 서비스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징수한다고 주장함
- (정책) '공정하고 상호적인 계획(Fair and Reciprocal Plan)'을 도입하여 해당 계획에 따라 상호 관세에 상응하는 금액을 결정할 것이며, 다음을 포함한 포괄적인 범위에서 비상호적 무역 관계를 검토할 것임¹⁴⁹⁾
 - (a) 관세
 - (b)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세금 및 역외 부과 세금(부가가치세¹⁵⁰⁾ 포함
 - (c) 비관세 장벽 및 보조금을 포함한 부당한 정책, 관행 및 규제 요건 등으로 인해 미국의 기업, 근로자,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
 - (d) 미국에 피해를 주는 환율정책, 임금 억제 등 기타 중상주의 정책
 - (e) 무역대표부가 재무부 장관 등과 협의하여 판단했을 때 불공정한 규제 또는 미국 시장 경제와의 공정 경쟁에 구조적 장애를 초래하는 기타 관행
- (조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각서에 따른 지정 기관의 보고서 제출 후, 상무부장관과 무역대표부는 관련 행정부 및 기관장과 협의하여 비상호적 무역 피해를 조사를 시행하고 권고안을 포함한 보고서를 18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함¹⁵¹⁾

148)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Section 1

149)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Section 2

150) 부가가치세는 공급망의 각 단계에서 상품 및 서비스의 가치 증가분에 부과되는 일종의 소비세를 의미함(Reciprocal Trade and Tariffs Section 4)

- 상호 관세는 각 무역 상대국의 관세, 비관세 등을 검토한 후 국가별 관세율 등을 결정하여 실행할 예정임
 - 행정부 차원의 연구 검토 시한이 2025년 4월 1일까지로, 이르면 검토가 마무리된 4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됨
 - 상호 관세는 국가별로 검토하여 차등화된 관세율을 적용할 것이라 예고함
 - 상호 관세 발표 초기에는 미국과 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들은 이미 호혜적인 상호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므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 추측하였음
 - 하지만 하워드 루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 지명자는 한국, EU, 일본과 같은 동맹국에 상관없이 검토할 계획임을 언급함¹⁵²⁾
 - 특히, 이번 불공정 무역 대상에 부가가치세, 비관세 장벽 등이 포함되면서 무역 상대국은 전반적인 무역 시스템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도 미 상호 관세에 대응하기 위해 비관세 장벽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할 계획임¹⁵³⁾

나. 보편적 기본 관세 도입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물품에 ‘보편적 기본 관세(Universal Baseline Tariff, 이하 보편 관세)’를 적용할 전망이다
 - 트럼프는 대선 기간 미국 산업 및 노동자 보호라는 명목하에 보편 관세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1기보다 강한 관세 조치를 예고하였음
 - 미국 노동자를 보호하고 일자리의 해외 유출 방지를 위해 외국 생산자에게 관세를

151)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Section 3

152) Reuters, “Trump threatens new tariffs in bid to reshape trade”, February 14, 2025,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ays-reciprocal-tariffs-coming-thursday-2025-02-13/>, 검색일자: 2025. 02. 17.

153) Reuters, “South Korea to review non-tariff barriers to respond to US reciprocal tariff plan”, February 14, 2025,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south-korea-review-non-tariff-barriers-respond-us-reciprocal-tariff-plan-2025-02-14/>, 검색일자: 2025. 02. 17.

부과한다는 명목에 따른 조치임¹⁵⁴⁾

- 소득세에 의존하는 대신 관세로 정부 자금을 조달할 것이며 특히 관세로 육아 비용을 충당하겠다고 제안함

○ 보편 관세 논의 초기에는 기존 관세율을 10% 상승시키자는 안이 제시되었으나, 이후 20% 안까지 제시되었음

- 재무부 장관은 1월 28일 보편 관세에 대해 2.4%를 시작으로 최고 2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밝힘

○ 보편 관세는 현재 적용 관세에 누적(추가)하는 방식으로 부과될 것으로 예상됨

- 과거 닉슨 정부가 1971년 10% 보편 관세(10% ad valorem duty)를 적용할 당시 기존 품목별 관세율에 보편 관세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과세하였음¹⁵⁵⁾
- 무역대표부도 보편 관세는 기존 수입 상품에 부과되는 관세율에 추가 부과될 것이라고 언급함¹⁵⁶⁾

○ 보편 관세는 중국 외에도 미국의 동맹국이나 FTA 체결국에도 부과한다는 방침이므로 한국도 예외일 수 없음

- 특정 국가의 특정 물품에 별도로 부과되는 것이 아닌 모든 수입품에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상계 관세 등과는 차이가 있음

○ 취임 첫날 모든 국가에 보편 관세를 즉각 도입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구체화하지 않았음

□ 그후 2월 1일,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중국에는 10%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함

○ 앞선 지난 1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IEEPA」를 근거로 추방 이민자 수용을 거부

154) 이정아,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24, p. 2.

155) 법무법인(유) 세종,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관세정책의 변화」, 2024. 11. 21,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17>, 검색일자: 2025. 02. 12.

156) Charlie Savage, Jonathan Swan and Maggie Haberman, "A New Tax on Imports and a Split From China: Trump's 2025 Trade Agenda", *Newyork Times*, 2023.; 이정아(2024) p. 2.

한 콜롬비아에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위협하였으나 9시간 만에 합의하여 보류하였음

- 캐나다와 멕시코는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한 달간 관세 부과를 유예하였으나, 중국은 보복 관세 조치로 대응함에 따라 2월 4일부터 부과됨
- 품목별로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추가 관세 부과(철강·알루미늄 관세 2.0)를 발표하였으며 3월 12일 발효됨
 - 지난 2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예외나 면제 없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선언문에 서명함¹⁵⁷⁾
 - 철강 수입에 대한 25% 관세를 전면 재부과하고,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율은 기존 10%에서 25%로 인상함
 - 국가별 예외 및 할당량, 관세 면제 등을 폐기하였으며, 이는 3월 12일부터 발효될 예정임
 - 트럼프 1기였던 2018년 당시 철강 관세에 예외를 두었던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일본, 멕시코, EU, 우크라이나, 영국 등에도 일괄적으로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됨
 - 단, 호주산 철강의 경우 미국 국방 분야에 특수 용도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호주에 대해서는 면제를 고려하고 있음
 -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HTSUS 8자리 또는 10자리 기준에 따라 철강 167개, 알루미늄 122개로 총 289개 품목이 지정되었음
 - 다만, 미국에서 용해 및 주조된 철강·알루미늄 제품이 다른 국가에서 가공된 경우는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됨¹⁵⁸⁾
 - 파생 제품 중 HTSUS 제73류(철강 제품)와 제76류(알루미늄 제품)로 분류되지 않

157)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Restores Section 232 Tariffs", February 11, 20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restores-section-232-tariffs/>, 검색일자: 2025. 02. 12.

158) GPO,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Vol. 90, No. 31, President Document, 2025, <https://www.govinfo.gov/content/pkg/FR-2025-02-18/pdf/2025-02833.pdf>. 검색일자: 2025. 02. 28.

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강·알루미늄 함유량에 대해서만 적용됨¹⁵⁹⁾

- HTSUS 제73류와 제76류로 분류되지 않는 제84류(기계류), 제87류(수송기기), 제94류(가구 등) 등 다수의 파생 제품이 포함됨

- 트럼프 1기 행정부는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통해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하였으나, 여러 무역 상대국에 면제를 허가하였음
- 상무부 산하 국제무역청(ITA)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철강 수입액(총액 316억 달러)이 가장 많은 국가는 캐나다(전체 약 23%), 멕시코(11%), 브라질(9%), 한국(9%) 순이었음¹⁶⁰⁾

〈표 Ⅳ-9〉 철강·알루미늄 추가 관세 대상 품목 리스트

철강 대상 품목 HS code				알루미늄 대상 품목 HS code			
철강 제품		기타 제품		알루미늄 제품	기계전자류	수송기기	기타 제품
7301.20	7314.39	7319.90	기계전자류	7610.10	8414.59	8708.10	6603.90
7302.30	7314.41	7320.10	8431.31	7610.90	8415.90	8708.29	9013.90
7307.21	7314.42	7320.20	8431.42	7615.10	8418.99	8708.80	9031.90
7307.22	7314.49	7320.90	8431.49	7615.20	8419.50	8708.99	9506.11
7307.23	7314.50	7321.11	8432.10	7616.99	8419.90	8716.80	9506.51
7307.29	7315.11	7321.12	8432.90	비금속 제품	8422.90	8807.30	9506.59
7307.91	7315.12	7321.19	8547.90	8302.10	8424.90	-	9506.70
7307.92	7315.19	7321.81	가구 등	8302.20	8473.30		9506.91
7307.93	7315.20	7321.82	9403.20	8302.30	8479.89		9506.99
7307.99	7315.81	7321.89	9405.99	8302.41	8479.90		9507.30
7308.10	7315.82	7321.90	9406.20	8302.42	8481.90		9507.90
7308.20	7315.89	7322.19	9406.90	8302.49	8486.90		9603.90
7308.30	7315.90	7322.90	-	8302.50	8487.90		가구 등
7308.40	7316.00	7323.10		8302.60	8503.00	9401.99	
7308.90	7317.00	7323.93		8305.10	8508.70	9403.10	

159) GPO(2025)

160) ITA, "U.S. Steel Import Monitor" <https://www.trade.gov/data-visualization/us-steel-import-monitor>, 검색일자: 2025. 02. 11.

〈표 IV-9〉의 계속

철강 대상 품목 HS code			알루미늄 대상 품목 HS code				
철강 제품		기타 제품	알루미늄 제품	기계전자류	수송기기	기타 제품	
7309.00	7318.11	7323.94	-	8306.30	8513.90	9403.20	
7310.10	7318.12	7323.99			8515.90	9403.99	
7310.21	7318.13	7324.10			8516.90	9405.99	
7310.29	7318.14	7324.29			8517.71		
7311.00	7318.15	7324.90			8517.79		
7312.10	7318.16	7325.91			8529.90		
7312.90	7318.19	7325.99		-	8536.90	-	
7313.00	7318.21	7326.11			8538.10		
7314.12	7318.22	7326.19			8541.90	-	
7314.14	7318.23	7326.20			8543.90		
7314.19	7318.24	7326.90			8547.90		
7314.20	7318.29	-			-		
7314.31	7319.40	-			-		

주: 편의를 위해 HS 6자리로 작성하였음

자료: GPO,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Vol. 90, No. 31, President Document, 2025. 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추가로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5일 ‘구리 수입으로 인한 국가안보 위협 해결’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함
- 단일 중국 생산자가 세계 제련 시장의 50% 이상을 통제하고 상위 5대 정제 시설 중 4곳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미국 경제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함¹⁶¹⁾
 - 미국의 구리 수입의존도는 1991년 사실상 0%에서 2024년 45%로 급증하였음
 - 이에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정제한 구리, 구리 스크랩 등을 포함한 구리 수입의 국가안보 영향에 대해 조사할 것을 명령함

161) The White House, “Addressing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From Imports of Copper”, February 25,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addressing-the-threat-to-nationalsecurity-from-imports-of-copper>, 검색일자: 2025. 02. 26.

-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등의 품목별 대규모 관세 부과도 예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함¹⁶²⁾
 - 자동차에 25%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4월 2일경 발표할 예정임
 - 단, 발표일에 즉시 부과하는 것이 아닌, 일정 시간 이후에 발효함으로써 생산 거점을 미국으로 이전할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할 것이라고 언급함
 - 스티븐 밀러(Steven Miller)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미국의 자동차 판매세(Sales Tax)는 평균 6.6%인데 비해 EU의 미국산 자동차 관세 및 VAT의 영향은 약 30%이므로 상호 관세 30%를 부과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언급함¹⁶³⁾
 - 반도체 및 의약품과 관련하여 관세율은 25% 이상이 될 것이고 1년에 걸쳐 인상할 것이라고 밝힘
 - 특정 국가 및 구체적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으며, 조사를 마치는 4월 2일경 확정 발표할 것을 예고함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목재 등에 대한 관세 부과 조사를 상무부에 지시함
 - 3월 1일 목재 및 목제품에 대해 상무부에 「무역확장법」 제232조 관련 국가안보 조사 개시를 지시하였으며, 11월 26일까지 조사 보고서가 제출될 예정임
 - 미국 내 충분한 목재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활용하지 않고 수입하여 외국 생산자에게 의존함으로써 경제적 안보에 위협이 있음을 주장함¹⁶⁴⁾

162)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After Executive Order Signing”, February 18, 2025,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5/02/1458/>, 검색일자: 2025. 02. 19.

163) Forbes, “Trump Says Value-Added Taxes Will Be Considered Tariffs: What To Know About His Reciprocal Tariff Plan—And Its Inflation Impact”, February 15, 2025, <https://www.forbes.com/sites/dereksaul/2025/02/15/>, 검색일자: 2025. 02. 18.

164) The White House, “Immediate Expansion of American Timber Production”, March 1,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immediate-expansion-of-american-timber-production/>, 검색일자: 2025. 03. 18.

□ 농산물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3월 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외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를 4월 2일부터 부과할 것이라고 게시함
 - 구체적인 적용 품목 및 정책 등에 대해서는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
- 미국 내에서도 농산물 관세 부과 시 상대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수출입 의존도가 높은 농업계의 손실을 우려하고 있음
 - 대두, 옥수수, 밀 등은 미국의 주요 수출 품목이므로 중국 등이 보복 조치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출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¹⁶⁵⁾
 - 미국 농가도 비료 수요의 85%를 캐나다에서 수입하고 있으므로 고율 관세 부과 시 비용의 급등을 우려하는 실정임¹⁶⁶⁾
 - 특히, 미국은 수입 소고기의 절반 이상을 캐나다와 멕시코에서 공급받으므로 식료품 업계의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며, 반대로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84억달러 규모의 고기를 수출하고 있으므로 이들 국가의 고율 관세 부과 시 더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임¹⁶⁷⁾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보편 관세정책이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경제학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음

- 연방 예산위원회(CRFB)는 2월 1일 발표한 관세(추가 관세 적용 시 중국 10%p, 멕시코와 캐나다 25%p) 부과로 2025년부터 2035년까지 통상적인 기준으로 세수가 1조 6,000억¹⁶⁸⁾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¹⁶⁹⁾

165) NBC NEWS, “Farmers face steep losses in the middle of Trump's trade war and funding cuts”, March 14, 2025, <https://www.nbcnews.com/politics/economics/farmers-face-steep-losses-middle-trumps-trade-war-funding-cuts-rcna195967>, 검색일자: 2025. 03. 18.

166) AP News, “‘Bear with me,’ Trump says as both farmers and consumers brace for tariff effects”, March 6, 2025,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farms-farmers-mexico-canada-china-prices-3a460f004633c10a6da6c4f97627dd13>, 검색일자: 2025. 03. 18.

167) 상동

168) 관세가 낮은 상품에 대한 최소 관세 적용 시에는 1조 5,000억달러, 이에 경제적 효과를 감안하면 2035년까지 1조 3,000억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함(CRFB, 2025)

169) 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 “Trump’s Latest Tariff Plan Could Raise \$1.5 Trillion”, January 22, 2025, <https://www.crfb.org/blogs/trumps-latest-tariff>

- 반면 Tax Foundation(2025)은 보편 관세 부과 시 연방 세수는 증가할 것이나, 공급망의 붕괴로 기업 비용이 증가하고 수십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며 미국 GDP가 0.4%p 감소하는 등 광범위한 경제에서의 상당한 비용 부담을 예측함¹⁷⁰⁾

〈표 IV-10〉 보편 관세 부과 시 예상되는 영향

대상	GDP	자본금	세전 임금	정규직 환산 근무시간
중국	-0.1%p	-0.1%p	0.00%p	-82,000
멕시코	-0.1%p	-0.1%p	0.00%p	-116,000
캐나다	-0.1%p	-0.1%p	0.00%p	-86,000
제232조	Less than -0.05%p	Less than -0.05%p	0.00%p	-25,000
총부과	-0.4%p	-0.3%p	0.00%p	-309,000

자료: Tax Foundation(2025) 검색일자: 2025. 03. 13.

- Bloomberg(2025)도 캐나다·멕시코·중국이 동일 수준으로 보복 관세 부과 시 미국 GDP는 1.2%p 감소하고 근원 PCE 물가는 0.7%p 상승할 것이라 예측함¹⁷¹⁾
- 또한 미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FR)는 캐나다·멕시코·중국 관세 부과 조치로 미국의 자동차, 에너지, 식품을 포함한 특정 수입 분야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반대로 상대 국가가 보복 조치 시 미국의 연료 수출 및 자동차, 제약 산업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함¹⁷²⁾

-plan-could-raise-15-trillion, 검색일자: 2025. 02. 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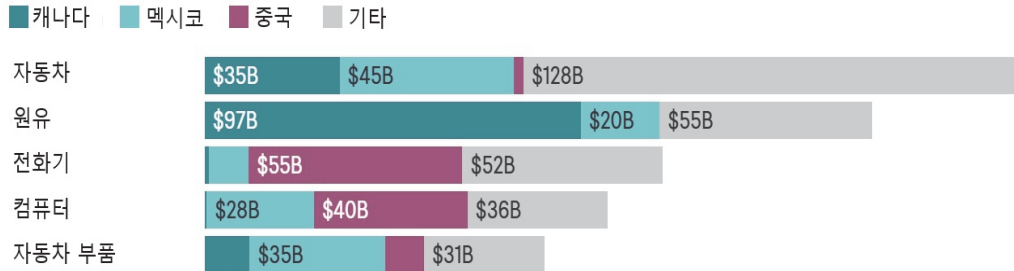
170) Tax Foundation(2025), 검색일자: 2025. 03. 13.

171) Bloomberg, "The Products Trump's Tariff Blitz Could Make More Costly, From Avocados to Cars", February 2, 202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2-02/trump-s-new-tariff-blitz-to-hit-avocados-cars-and-bell-peppers>, 검색일자: 2025. 02. 28.

172)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at Trump's Trade War Would Mean, in Nine Charts", February 5, 2025, <https://www.cfr.org/article/what-trumps-trade-war-would-mean-nine-charts#chapter-title-0-1>, 검색일자: 2025. 02. 28.

[그림 IV-7] 보편 관세 부과 시 미국의 타격 예상 수입 품목

(2023년 기준 상위 5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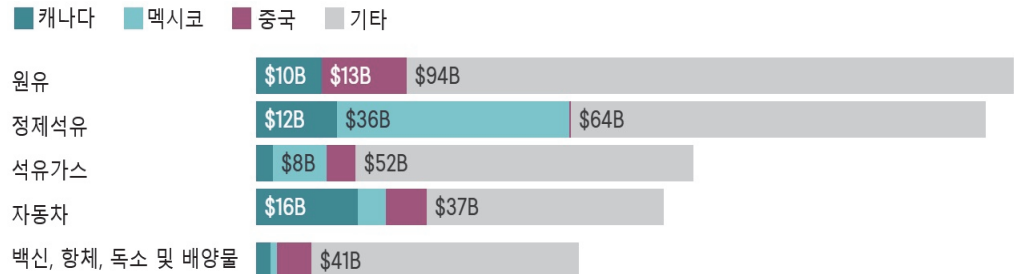


주: 제품은 HS 4단위로 분류함

자료: UN Comtrade; CFR(2025)

[그림 IV-8] 상대국의 보복 조치 시 미국의 타격 예상 수출 품목

(2023년 기준 상위 5개 품목)



주: 제품은 HS 4단위로 분류함

자료: UN Comtrade; CFR(2025)

다. 주요국에 대한 관세정책

1) 캐나다·멕시코의 고율 관세 부과

□ 트럼프 2기 행정부는 「IEEPA」 등을 근거로 캐나다와 멕시코의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추가 부과하기로 하였으나 한 달간 유예하기로 전격 합의함

○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으로부터의 불법 이민과 펜타닐 등 밀수 약물

의 유입이 공중 보건 위기를 포함한 국가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관세 부과 조치를 시행함¹⁷³⁾

- 지난 2월 1일 ‘북부 국경을 통한 불법 마약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의무 부과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행정명령에 서명함

- 동 행정 명령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와 「국가비상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of 1976, NEA)」, 「무역법」 제604조 및 미연방법 제3편 제301조에 근거함

- 단,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선언(Declaring a National Energy Emergency, EO 14156)’에 따라 캐나다산 에너지 자원에는 10% 관세를 부과함¹⁷⁴⁾

- 동 선언의 ‘에너지’ 또는 ‘에너지 자원’이라는 용어는 30 USC §1606 (Mineral security) (a)(3)에 정의된 원유, 천연가스, 액화천연가스, 정제 석유제품, 우라늄, 석탄, 바이오 연료, 지열 등을 포함함¹⁷⁵⁾

- 미국은 캐나다 에너지 수입 대상국 1위로, 미국 원유 수입의 58.5%, 천연가스 수입의 100%를 기록하는 등 수입의존도가 높음¹⁷⁶⁾

- 또한 미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경제적 입지를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밝힘

- 캐나다와 멕시코는 NAFTA 이후 대다수 품목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고 있음

- 중국, 멕시코, 캐나다는 수입 기준으로 미국의 가장 큰 교역국이며, 2022년 기준 각각 약 5,360억달러, 4,550억달러, 4,370억달러의 상품을 수출함¹⁷⁷⁾

173) The White House, “Fact sheet : President Donald J. Trump Imposes Tariffs on Imports from Canada, Mexico and China”, February 1, 20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2025/02/fact-sheet-president-donald-j-trump-imposes-tariffs-on-imports-from-canada-mexico-and-china/>, 검색일자: 2025. 02. 03.

174) The White House,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flow of Illicit Drugs across our northern border”, February 1,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2/imposing-duties-to-address-the-flow-of-illicit-drugs-across-our-national-border/>, 검색일자: 2025. 02. 03.

175) HTS code 2709(원유), 2710(석유와 역청유), 2711(석유가스), 2716(전기에너지) 등을 포함(Tax Foundation, 2025)

176) 양지원 외,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TRADE BRIEF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25, p. 2.

- 무역은 캐나다 GDP의 67%, 멕시코 GDP의 73%, 중국 GDP의 37%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 GDP의 24%에 불과하나, 2023년 미국의 상품 무역 적자는 1조달러를 넘어 세계 최대를 기록하였음¹⁷⁸⁾

□ 트럼프 관세 부과 발표 직후 캐나다, 멕시코는 미국의 관세 조치에 신속하게 추가 관세 발표로 대응함

- 캐나다는 1,550억달러(CAD) 규모의 상품에 대해 25% 보복 관세를 발표함¹⁷⁹⁾
 - 추가 관세 목록에는 화장품, 가전제품, 타이어, 플라스틱, 가구 등이 포함
 - 300억달러(CAD) 상당의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 관세는 4일 발효되며, 1,250억달러(CAD) 상당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21일 이후부터 추가 적용할 계획임
 - 관세 외에도 핵심 광물 및 에너지 분야에 대한 비관세 조치도 고려 중임
 - 또한 이번 관세 조치를 무역 협정의 위반으로 간주하고 WTO에 제소 예정임
- 멕시코도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 및 비관세 조치를 포함한 '플랜 B'를 가동할 것이라고 예고함
 - 돼지고기, 치즈, 농산물,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산 수입품에 5~2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

□ 양국은 조치 전 미국과 협의를 통해 2월 3일, 관세 부과를 한 달간 유예하였다가 한 달 후인 3월 4일, 예정대로 시행 후 다시 이틀 만에 추가 유예함

-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관세 무기화' 압박은 상대국의 협조를 얻어냈으며, 유예 기간 동안 무역 및 안보 등과 관련하여 협력이 진전될 것으로 예상됨
 - 멕시코(클라우디아 세인바움 대통령)는 펜타닐 유통과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멕시코-미국 국경에 1만명의 군병력을 즉시 배치할 것에 동의함

177) CNBC, "Here's how tariffs on Canada, China and Mexico may impact U.S. consumers", January 31, 2025, <https://www.cnbc.com/2025/01/31/how-tariffs-on-canada-china-and-mexico-may-impact-us-consumers.html>, 검색일자: 2025. 02. 03.

178) The White House(February 1, 2025)

179) BBC, "Canada imposes 25% tariffs in trade war with US", <https://www.bbc.com/news/articles/cn4z23kndlyo>, 검색일자: 2025. 02. 03.

- 캐나다(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마약 문제를 담당하는 ‘펜타닐 차르(Fentanyl Czar)’를 임명하고, 국경에 1만 명의 인력과 13억달러(CAD) 투입 등을 약속함
- 하지만 한 달 후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약물 유통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며 3월 4일부터 예정대로 관세 부과를 시행했으나, 시행 이틀째인 3월 6일, USMCA 품목에 한하여 4월 2일까지 추가 유예함¹⁸⁰⁾
 - 3월 5일에는 자동차 수입에 대한 관세 부과를 4월 2일까지 연기하였음
 - 캐나다산 농업에 사용되는 칼륨은 비USMCA 품목으로 관세를 10%로 인하함

2) 중국에 대한 무역정책 강화

-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도 2차 미·중 관세 전쟁을 예고하였음
 - 선거 기간 동안 중국에 60%의 고세율을 부과할 것을 표명한 바 있음
 - 고율 관세 부과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국의 WTO 가입 시 시장 개방 조건으로 부여했던 최혜국(MFN) 지위인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PNTR)’ 혜택 철회를 공표함¹⁸¹⁾
 - 중국산 철강, 의약품 등 필수품의 수입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국산 자동차 수입을 전면 차단할 것이라고 발표함
 - 기업들의 대중국 투자 규제 및 모든 중국 아웃소싱 기업에 대한 연방 계약을 금지하며,¹⁸²⁾ 중국의 미국 내 부동산 또는 기업 인수를 중단하기로 함
-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통해 대중 무역 및 관세 부과의 입장을 재확인함
 - 무역대표부는 중국과의 경제 및 무역 협정을 검토하여 중국이 협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결과에 따라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권고하도록 함¹⁸³⁾

180) The White House, “Fact Sheet: President Donald J. Trump Adjusts Tariffs on Canada and Mexico to Minimize Disruption to the Automotive Industry”, March 6, 2025, <https://www.whitehouse.gov/fact-sheets/>, 검색일자: 2025. 03. 12.

181) 조성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KITA 통상 리포트』 제12호, 한국무역협회, 2024, p. 3

182) 이정아(2024), p. 3.

- 무역대표부는 ‘제301조 조사에서 취한 조치에 대한 3년 검토’ 보고서를 평가하고 대중 제301조 관세의 추가 인상을 검토해야 하며, 특히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해야 함
- 또한 연방 법률(19 U.S.C. §2411)에 따라 종전 무역 협정의 특혜 취소 및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 해소를 위한 협상 요구 등을 검토해야 함
 -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공동으로 ‘항구적 정상무역관계(PNTR)’ 취소를 위한 법률 개정 절차를 제안해야 함
 - 상무부 장관 등은 중국에 부여된 미국의 지식재산권 등을 평가하고 상호 균형적인 대우를 보장하기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도록 함
 - 상무부 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은 불법 약품의 유통과 이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을 평가하고 무역 및 국가안보 조치를 권고하도록 명령함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모든 중국산 제품에 대해 기존 관세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3월 다시 10% 관세 인상을 발표함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1일 ‘Imposing Duties to Address the Synthetic Opioid Supply Chain in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중국의 합성 오피오이드 공급망 문제 해결을 위한 의무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함
 - 캐나다-멕시코 관세 부과와 동일하게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등을 근거로 함
 - 불법 약물 유통 등의 위기가 완화될 때까지 부과할 예정임
 - 캐나다, 멕시코가 합의에 이르며 관세 유예를 적용한 것과 달리 중국과는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2월 4일부터 10% 추가 관세가 발효됨
 - 2월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관세에 10% 관세 인상을 추가 발표하였으며, 이는 3월 4일부터 발효되어 총 20% 추가 관세가 부과됨
- 중국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추가 관세 부과에 대응하여 보복 관세를 부과함
 - 중국 상무부는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국의 일방적 추가 관세 조치는 WTO 규칙을

183) The White House, “America First Trade Policy”, Section 3(a), January 20, 2025.

-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WTO에 제소할 것임을 밝힘
- 중국은 2월 10일부터 특정 유형의 석탄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8개 품목에 15%의 관세를, 원유·농업기계·대형 배기량 자동차·트럭 등 72개 품목에 10%의 관세 부과를 발표함¹⁸⁴⁾
 - 금속 제품과 관련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도 즉시 발효함¹⁸⁵⁾
 - 방위산업의 주 광물인 텅스텐과 태양전지 제조에 사용되는 텔루륨(Tellurium)이 포함됨
 - 생명과학 회사인 일루미나(ILLUMINA)와 패션 소매업체 PVH Group 등 미국 기업에 대해 “정상적인 시장 거래 원칙을 위반했다”는 명목으로 ‘신뢰할 수 없는 기업(unreliable entities list)’ 목록에 추가함¹⁸⁶⁾
 - 중국 시장 규제국(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 SAMR)은 「독점 금지법」 위반으로 Google에 대한 조사를 개시함¹⁸⁷⁾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4일 소액 면세 조항인 ‘de minimis’ 폐지를 위해 중국 및 홍콩에서 오는 국제 소포 발송을 일시 중단할 것을 발표하였으나, 다음 날 “적절한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de minimis를 연장하기”로 하면서 조치를 번복함¹⁸⁸⁾
- 작년 9월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미국 내 판매 실적이 급증한 중국의 유통업체인 테무(Temu), 쉬인(Shein) 등이 해당 규정을 악용해 제301조 품목임에도 면세를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재검토 조치를 발표함¹⁸⁹⁾

184) China Briefing,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 2.0 Era: A Timeline”, January 21, <https://www.china-briefing.com/news/us-china-relations-in-the-trump-2-0-implications>, 검색일자: 2025. 02. 10.

185) 상동

186) China Briefing(2025).

187) 상동

188) 상동

189) CNBC, “Biden targets Shein, Temu with new rules to curb alleged ‘abuse’ of U.S. trade loophole”, September 14, 2024, <https://www.cnbc.com/2024/09/13/de-minimis-shein-temu-biden-china-rules.html>, 검색일자: 2025. 01. 08.

- 또한 멕시코 등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 차단을 위해 제3국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기존 무역 협정을 개선할 예정임
 - 트럼프 대통령은 2026년 예정된 USMCA 재검토 및 개정 등을 활용해 원산지 규정을 강화하여 멕시코 등을 통한 중국의 우회 수출을 차단할 계획임¹⁹⁰⁾
 - USMCA 체결 후, 멕시코의 대미 수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함에 따라 미국은 중국 기업의 우회 수출을 의심함
 - 중국 기업의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한 자동차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중국의 제3국을 통한 우회를 적극적으로 차단할 것을 언급함¹⁹¹⁾

- 미국은 중국의 기술력을 견제함과 동시에 이로 인한 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통신 기술 및 서비스(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and Services, ICTS)’ 거래를 규제하는 방안을 마련함
 -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Bureau of Industry and Security, BIS)은 중국의 커넥티드 차량 기술, 부품을 겨냥하여 적성국 기업과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ICTS 거래를 금지하는 규정 입법을 예고함¹⁹²⁾
 - 적성국의 커넥티드 차량 관련 필수 ICTS 거래를 금지하는데, 적성국으로 지정된 6개국(중국, 쿠바, 이란,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중 해당 기술과 역량을 보유한 국가는 중국이 유일함¹⁹³⁾

3) 기타 주요국에 대한 관세정책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초 관세 부과 대상국은 콜롬비아였으나, 합의 후 9시간 만에 철회함

190) Politico, “Trump promises to ‘revolutionize’ auto industry in pitch to Michigan voters,” October 10, 2024, <https://www.politico.com/news/2024/10/10/trump-michigan-00183324>, 검색일자: 2025. 01. 08.

191) Trump Agenda 47 Chapter 5

192) 이유진·한아름(2024), p. 26.

193) 상동

- 콜롬비아가 불법 이주민을 태운 미 군용기의 착륙을 거부하자 미국은 관세 부과, 비자 취소, 금융 제재 등의 보복 조치를 단행함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근거로 콜롬비아산 모든 수입품에 즉시 25% 관세를 부과하고, 1주일 이내 관세를 50% 인상하는 조치를 명령함¹⁹⁴⁾
 - 콜롬비아도 초기에는 50% 관세 부과 조치로 대응하였으나, 이후 불법 이민자를 수용하기로 합의함
-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초기부터 EU에 절대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함
- 트럼프 1기 당시에도 EU에 대한 관세 부과로 EU와의 무역 갈등이 있었음
 -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은 EU에서 수입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 10% 관세를 부과하였으며, EU도 미국산 자동차, 농산물 등에 보복 관세를 부과함
 - 2019년 WTO가 유럽 항공사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은 와인, 치즈, 항공기 부품 등에 평균 2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함
 -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의 무역이 위축됨에 따라 관세 부과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었음
 -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EU가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를 충분히 수입하지 않아 미국이 EU를 상대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고 주장함
 - 트럼프 대통령은 2월 26일 각료회의에서 자동차를 포함한 EU의 모든 수입품에 일 반적으로 25%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발표함¹⁹⁵⁾
-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불공정한 관세 부과에 단호히 대응할 것을 밝힘
- EU 집행위원회는 보편 관세에 대해 “기업의 비용을 가중시키고 인플레이션을 촉발

194) The White House, “Statement from the Press Secretary”, January 26, 2025,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s-statements/2025/01/statement-from-the-press-secretary/>, 검색일자: 2025. 02. 04.

195) The White House, “Remarks by President TRUMP Before Cabinet Meeting”, February 26, 2025, <https://www.whitehouse.gov/remarks/2025/02/remarks-by-president-trump-before-cabinet-meeting/>, 검색일자: 2024. 03. 18.

하고 불필요한 경제적 차질을 일으켜 양측에게 해롭다”는 입장임

- 또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에 대해 보복 관세 조치를 발표하였음
 - 1단계로 4월 1일 오토바이, 청바지 등을 포함한 8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수입품에 적용 후 나머지는 4월 중순에 적용할 예정임¹⁹⁶⁾
- 또한 EU는 미국 관세의 대응책으로 멕시코 등 타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견고히 함으로써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시행함
 - EU는 1월 17일 멕시코와의 글로벌 협정을 현대화하는 협상을 체결하였음¹⁹⁷⁾
 - 주요 원자재의 지속 가능한 공급처 확보, 기후 변화 대처를 포함하여 해당 협정은 다자주의, 국제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동의 목표를 구축함
 - 특히, EU의 주요 수출 제품인 치즈, 가금류, 초콜릿, 와인 등에 대해 최대 100%의 관세를 철폐하였으며, 수출입 절차를 간소화함
 - 멕시코는 EU 농식품 제품의 순 수입국이므로 EU의 농업 및 농식품 수출업체에 많은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EU는 작년 12월 MERCOSUR(남미공동시장)과 25년 만에 FTA 협정을 체결하고 거대 단일시장 출범에 합의하였으며, 말레이시아와의 FTA도 13년 만에 재개하였고, 스위스와도 무역 관계 강화를 위한 협정을 체결하기로 함

라. 우리나라에 대한 관세정책

- 우리나라도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므로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정책의 다음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함
 - 우리나라는 미국과 한-미 FTA를 체결한 호혜적 협력국이나, 트럼프 관세의 경우 ‘한-미 FTA의 예외 조항’을 근거로 관세 적용을 구상 중임

196) Tax Foundation(2025), 검색일자: 2025. 02. 03.

197) EU, “Negotiators conclude on modernised Global Agreement with Mexico”, January 17, 2025.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mexico/negotiators-conclude-modernised-global-agreement-mexico_en, 검색일자: 2025. 02. 03.

- 한-미 FTA는 2012년 3월 15일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의 대미 수입품에 대한 평균 관세율은 2024년 기준 0.79%(환급 비고려 실효세율)¹⁹⁸⁾
 - 해당 협정의 제23.2조(필수적 안보)는 “당사국이 국제 평화 및 안보의 유지, 회복에 대한 자국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또는 자국의 필수적 안보 이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는 적용을 배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¹⁹⁹⁾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에서 무역대표부에 기존 무역 협정 재검토를 지시하였음
 - 트럼프 1기인 2018년에도 양국은 한-미 FTA 재협상을 진행한 바 있음
 - 재협상 당시 철강 관세 및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등을 방어하는 대신 자동차 분야에서 일부 양보하는 것으로 타결함²⁰⁰⁾
 - 특히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산업군은 트럼프의 보편 관세 성격인 품목별 관세의 주요 부과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음
 - 해당 품목은 우리나라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으로 고율 관세 부과 시 직접적인 수출 타격이 예상됨
 - 또한 해당 산업군의 경우 멕시코, 캐나다, 중국 등에 생산 공장이 있어 멕시코 등에 고율 관세가 적용된다면 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1,278억달러로 작년 대비 10.4% 증가했으며, 수입은 721억달러로 작년 대비 1.2% 증가하여, 우리나라 대미 무역수지는 557억달러 흑자를 기록함

198) 기획재정부 통상정책총괄과, 「한-미 FTA에 따라 對美 수입품에 대한 실효 관세율은 0%대 수준입니다.」, 2025. 02. 14,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72639&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5. 02. 18.

199)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23장 제23.2조

200) 화물자동차 관세 철폐 기간을 10년 차 철폐(2021년 종료 예정)에서 추가로 20년 연장(2041년까지) 하였고, 미 안전기준 충족 시 한국에서 추가 검증 없이 수입을 허용하는 자동차 쿼터도 2만 5,000대에서 5만대로 확대하였으며, 자동차 연비와 온실가스 관련하여 차기 기준(2021~2025년)을 설정할 때 미국 기준을 고려하는 것으로 합의함(산업통상자원부, 「미 철강 관세 한국 면제...한-미 FTA 개정도 합의.」, 2018. 03. 26, <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8764a1224/155116584/view>, 검색일자: 2025. 02. 18.)

- 2024년 미국의 수입 중 한국의 비중은 4.0%로 7위를 차지함
 - 미국의 주요 수입국은 멕시코(15.6% 비중), 중국(13.5%), 캐나다(12.6%), 독일(4.9%), 일본(4.6%), 베트남(4.2%) 순임
 - 미국의 수출 중 한국의 비중은 3.2%로 8위를 기록함
- 미국의 적자국 중 한국은 8위(658억 4,500만달러 적자)를 차지함

〈표 IV-11〉 2024년 미국의 10대 수입국 및 적자국

(단위: 백만달러, %)

No	10대 수입국			10대 적자국	
	국가	수입액	비중	국가	적자액
1	멕시코	505,851	15.5	중국	294,432
2	중국	438,947	13.4	멕시코	171,186
3	캐나다	412,696	12.6	베트남	123,456
4	독일	160,437	4.9	아일랜드	86,538
5	일본	148,209	4.5	독일	84,682
6	베트남	136,561	4.2	대만	74,101
7	한국	131,549	4.0	일본	68,264
8	대만	116,264	3.6	한국	65,845
9	아일랜드	103,286	3.2	캐나다	62,974
10	인도(인디아)	87,416	2.7	태국	45,773
10개국 총수입액		2,241,216	68.6	10개국 총적자액	1,077,252

자료: K-stat,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USStats.screen>, 검색일자: 2025. 02. 0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를 특정하여 관세 조치를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관세정책의 상당 부분은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보편 관세 부과는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 수출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 보편 관세 부과 시 관세 인상에 따라 직접적인 대미 수출은 축소될 것임
 - 반면 특정국에만 관세 부과 시 제3국으로의 중간재 수출 등은 축소되는 한편 대체 효과로 수출이 증가할 수 있으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측됨²⁰¹⁾

- 자동차, 반도체 등 특정 품목 관세 조치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됨
 - 최근 우리나라가 미국으로 수출한 주요 품목은 자동차와 자동차 부분품, 컴퓨터 부분품, 비휘발성 기억장치(메모리) 등이며, 해당 품목은 수출 의존도가 높음
 - 컴퓨터 부분품과 메모리, 전자집적회로(반도체)의 경우 전년 대비 100% 이상 수출액이 증가하는 등 주요 품목은 대부분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Ⅳ-12〉 최근 대미 수출 상위 10대 품목

(단위: 억달러, %)

No	HS	품목명	2020	2021	2022	2023	2024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수출액	증감률
1	8703	자동차	157	171	222	322	342	7.9
2	8473	컴퓨터 부분품 등	57	72	65	38	82	116.8
3	8708	차량용 부분품 등	47	59	70	70	71	1.2
4	8523	비휘발성 기억장치	41	51	58	16	54	236.0
5	2710	석유제품	23	47	62	57	51	-9.6
6	8507	배터리	12	27	41	48	39	-19.2
7	8479	기타 기계류	6	5	9	19	26	39.2
8	8418	냉장고	17	25	20	22	19	-14.1
9	8504	변압기	4	5	8	14	18	31.0
10	8542	전자집적회로	12	14	13	7	16	129.5
총계(전 품목)			741	959	1,098	1,157	1,278	10.4

자료: K-stat, <https://stat.kita.net/stat/kts/ctr/CtrlItemImpExpList.screen>, 검색일자: 2025. 02. 05.

- 이러한 가운데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를 예외 없이 일괄적으로 부과한다는 조치에 서명함
 - 트럼프 1기인 2018년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최대 53%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실제 25% 관세 부과)을 검토함

201) 한국무역협회(2025)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특정국(對 중국 10% 및 캐나다·멕시코 25%) 관세 조치가 우리나라의 대세계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0.03% ~ 0.1% 수준으로 제한적이나, 10%의 보편 관세 시행 시 미국의 총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며 대세계 수출은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양지원 외(2025), p. 16)

- 협상 끝에 최종적으로 한국은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대신 수입 쿼터(연간 263만 톤 이내 무관세 할당)를 수용함
- 이번 철강·알루미늄 관세 2.0은 예외나 면제 없이 모든 국가에 일괄적 부과를 선언 하였음
- 추가로 구리에 대한 불공정 무역 조사를 지시함
 - 모든 형태의 구리에 적용되며, 관세율 등은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
 - 우리나라의 대미 구리 수출 규모는 약 5억 7,000만달러로 칠레(미국 수입량의 35%), 캐나다(25%) 등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적음²⁰²⁾
-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4월부터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에 약 25%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함
 - 지난 2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4월 2일경부터 수입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음
 - 트럼프 대통령은 대신 기간 바이든 정부의 약 1조달러 무역 적자 원인은 유럽, 한국 등에서 수입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라고 언급함
 - 자동차는 대미 수출 품목 1위에 해당하므로 큰 타격이 예상됨
 - 한국의 전체 자동차 수출(683억달러)에서 미국의 비중이 절반이 넘는 50.8%를 차지하였으며, 전년(47.1%) 대비 대미 의존도도 심화되었음²⁰³⁾
 - 또한 한-미 FTA로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수입 관세는 사실상 0%였음
 - 승용차(4단위 기준 HS 8703)의 미국 기본 관세율은 2.5%이지만 한-미 FTA 협정 세율은 0%임
 - 추가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관세 외에 USMCA와 같이²⁰⁴⁾ 원산지 규

202) 연합뉴스, 「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하라"...관세 부과 시사」, 2025. 02. 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006551071?input=1195m>, 검색일자: 2025. 02. 27.

203)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2024년 對美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 『워싱턴통상정보』 제10호, 2025, p. 3.

204) USMCA의 자동차 관련 원산지 규정을 세번변경기준 및 부가가치기준 상향 조정(승용차 등의 역내 부가가치 비율 62.5% → 75%), 북미산 철강과 알루미늄 구매 요건(70% 이상 북미산 증명), 노동 부가가치기준(LVC) 신설(승용차는 40%, 트럭 45%) 통해 강화함

정 강화 등의 한-미 FTA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음

- 미 무역대표부는 한국에서의 별도 환경 인증 절차를 미국산 자동차 판매 부진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으며, 2018년 한-미 FTA 개정 시에도 이를 일부 반영하였음

○ 단,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에 상무부가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입이 국가안보에 영향이 있으며, 최대 25~35% 관세 부과를 권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음²⁰⁵⁾

〈표 Ⅳ-13〉 승용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표

HTS	품명	기준 세율	한미FTA 협정세율
870310	설상(雪上) 주행용 차량, 골프용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2.5%	0%
87032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것)		
87032100	실린더 용량이 1,000cc 이하인 것	2.5%	0%
87032200	실린더 용량이 1,000cc 초과, 1,500cc 이하인 것	2.5%	0%
87032300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2.5%	0%
87032400	실린더 용량이 3,000cc 초과인 것	2.5%	0%
87033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세미디젤]을 갖춘 것)		
87033100	실린더 용량이 1,500cc 이하인 것	2.5%	0%
87033200	실린더 용량이 1,500cc 초과, 2,500cc 이하인 것	2.5%	0%
87033300	실린더 용량이 2,500cc 초과인 것	2.5%	0%
87034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 제외)	2.5%	0%
87035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 제외)	2.5%	0%
870360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 한정)	2.5%	0%
870370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 한정)	2.5%	0%

205)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2024년 對美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 「워싱턴통상정보」 제12호, 2025, p. 3.

〈표 IV-13〉의 계속

HTS	품명	기준 세율	한미FTA 협정세율
870380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2.5%	0%
870390	기타	2.5%	0%

주: 관세율은 HS 8자리 및 10자리로 부과하나, 편의를 위해 일부 품목은 HS 6자리로 작성
 자료: 한-미 FTA 협정문;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검색일자: 2025. 02. 05.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우리나라 주요 품목인 반도체, 의약품 등에 대한 관세 부과도 예고함
 -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도 되찾아올 것”이라며 삼성, 애플에 대한 관세 면제가 없다고 언급함
 - 반도체의 경우 1997년 발효된 WTO의 ‘정보기술협정(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 ITA)’에 따라 현재 회원국 간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음
 - 한국 반도체의 대미 수출액은 24억달러를 기록하며 미국의 전체 반도체 수입액 중 6%를 차지함²⁰⁶⁾
 - 의약품 관세 부과 계획에 따라 국내 제약 및 바이오 업계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대부분 의약품의 경우 한-미 FTA에 따라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하고 있었음
 - 한국무역협회(2025)에 따르면, 한국 의약품의 대미 수출액은 약 15억달러에 해당하며, 전체 의약품 수출의 약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가전제품의 경우도 고율 관세 우려로 한국 기업들은 세탁기 외 다른 제품군의 현지화 방안을 검토 중으로 향후 가전제품의 수출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백악관은 트럼프 2기의 성과와 관련하여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한 후 거대 기업인 삼성과 LG는 멕시코 자사 공장을 미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함²⁰⁷⁾

206)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2025), p. 3.

207) The White House, “America Is Back — and President Trump Is Just Getting Started”, February 20, 2025,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2025/02/america-is-back-an>

-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인 2018년 1월 삼성전자, LG전자 등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²⁰⁸⁾를 발동, 이후 2023년 2월에 해당 조치는 종료됨
 - 세이프가드 발동 전 세탁기 현지 생산 공장을 구축하던 삼성전자, LG전자는 준공 일정을 앞당겨 2018년 1월 삼성전자는 사우스캐롤라이나 공장을, LG전자는 12월 테네시 공장에서 각각 세탁기 생산을 시작하였음

- 상호 관세 대상 국가 명단을 4월 2일경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미국에 상당한 관세를 부과하는 국가를 ‘Dirty 15’로 지목하고 이들 국가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힘²⁰⁹⁾
 - Dirty 15 국가 명단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한국도 미국의 주요 무역 적자국이므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 케빈 해셋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유럽과 중국, 한국에 대한 무역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함²¹⁰⁾

- 이러한 트럼프 관세정책에 우리 정부는 ‘통상 총력전’으로 대응할 계획임²¹¹⁾
 - 수출 전략 회의를 통해 관계 부처 장관들과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무역금융 지원 방안 등 범정부 수출 대책을 구상하고 있음
 - 정부는 미국 현지에서 미 행정부 등과의 면담을 통해 미국 관세 조치 등 통상 현안과 한-미 간 경제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음²¹²⁾

d-president-trump-is-just-getting-started/, 검색일자: 2025. 02. 21.

208) 세이프가드 발동 첫해(2018년)는 120만대 이하에 20%, 초과 물량에는 50% 부과, 2년차는 각 18%, 45%, 3년차는 각 16%, 40%를 부과하였으며, 효력 만료 전이었던 2021년에 2년 더 연장함

209) Reuters, “Trump still intends for reciprocal tariffs to kick in on April 2, White House says”, March 19, 2025, <https://www.reuters.com/world/us/countries-can-avoid-trumps-april-tariffs-by-cutting-trade-barriers-bessent-says-2025-03-18/>, 검색일자: 2025. 03. 19.

210) CNBC, “Trump economic advisor Kevin Hassett warns of more uncertainty over tariffs”, March 17, 2025, <https://www.cnbc.com/2025/03/17/trump-hassett-tariff-uncertainty-reciprocal.html>, 검색일자: 2025. 03. 18.

211) 기획재정부, 「최상목 권한대행 "대미 통상 총력전…무역금융에 360조 원+α 지원"」, 2025. 02. 18.,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716>, 검색일자: 2025. 02. 20.

〈표 IV-14〉 트럼프 관세 2.0의 타임라인

관세 대상	관세율	발효 일자	권한 근거	내용
· 1월 20일,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발표(각 부처 4월 1일까지 조사 완료 지시)				
콜롬비아	25% → 50% 인상	부과 유예	「IEEPA」	· 1월 26일, 불법 이민자 수송기 착륙 거부한 콜롬비아에 고율 관세 부과 명령 · 미국이 불법체류자 수용하며 유예
캐나다·멕시코	25% (캐나다산 에너지 10%)	4월 2일	「IEEPA」	· 2월 1일, 펜타닐 유통 등 방지를 위한 관세 부과 행정 명령 서명 · 2월 3일, 합의 후 30일간 유예 · 3월 4일, 유예 기간 만료 후 발효 · 3월 6일, 관세 4월 2일로 연기 발표
중국	10%+10%	2월 4일 (3월 4일 추가 발효)	「IEEPA」	· 2월 1일, 펜타닐 유통 등 방지를 위해 10% 추가 관세 부과 행정 명령 서명 · 중국 보복 관세 시행(2월 10일) · 3월 4일 기존 관세에 추가 10% 부과
철강·알루미늄	25%	3월 1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 2월 10일, 관세 행정 명령 서명 · 모든 국가에 예외 없이 부과
상호 관세	상대국 동등 수준	4월 초	IEEPA	· 2월 13일, '상호 관세 계획' 서명 · 관세 외 비관세 장벽 등을 국가별로 검토 후 차등적 세율 적용 예정
자동차 등	약 25%	4월 2일	「무역확장법」 제232조	· 2월 12일, 무역 불균형 해소를 이유로 자동차 관세 부과 발표
반도체·계약	25% 이상	미정	「무역확장법」 제232조	· 1월 28일, 관세 부과 예정 발표 · 2월 18일, 관세율 지정
구리	미정	미정	「무역확장법」 제232조	· 2월 25일, 조사 시작(11월 22일 보고서 제출 예정)
목재 등	미정	미정	「무역확장법」 제232조	· 3월 1일, 조사 시작(11월 26일 보고서 제출 예정)
농산물	미정	4월 2일	미상	· 3월 3일, 관세 부과 발표

주: 2025년 3월 20일까지 백악관 발표 기준임

자료: Tax Foundation, The White House 발표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V.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의 관세정책은 수입 창출 수단에서 국제 및 대외 정책의 전략적 도구로 진화함
 -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낮고 개방적인 시장이었으나, 관세정책은 최근 몇 년간 상당한 변화를 보였음
 - 특히, 트럼프 1기 행정부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고율 관세를 통한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국가안보와 불공정 무역 해소라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으나 세계 무역 질서의 혼돈을 야기했다는 비판을 받았음
 -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을 일부 완화하였으나, 여전히 보호무역주의 성향을 유지함
 -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급진적 관세정책은 글로벌 무역 흐름 및 세계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표 V-1〉 트럼프 1기와 2기의 관세정책 비교

구분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규제 방식	· 미국 국내법 활용 증가	· 미국 국내법 근거, · 즉각적인 조치 가능
근거법	· 「무역법」 제301조, · 「무역확장법」 제232조 등	· 「무역법」 제301조, · 「무역확장법」 제232조 외 · IEEPA, 미국 상호무역법(입법) 등
주요 내용	<p>품목</p> · 국가별 예외 등을 적용한 일부 핵심 품목 한정 고율 관세 부과 - 철강 25%, 알루미늄 10% 관세 부과 (국가별 예외, 면제 등 적용) 등	· 국가별 예외, 면제 없는 보편적·포괄적 관세 부과 - 철강 및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예외, 면제 없이 일괄 적용) 등
	<p>대상국</p> · 대중국 중심의 고율 관세 부과 - 중국에 품목별 최대 25% 관세 부과 등	· 중국 외 무역 적자국 고율 관세 부과 - 중국산 모든 수입품에 20% 보편 관세 부과 등

〈표 V-1〉의 계속

구분	트럼프 1기	트럼프 2기
	- 캐나다·멕시코와의 NAFTA를 SMCA로 개정	- 캐나다·멕시코산 모든 수입품에 25% 보편 관세 부과 등

자료: 한국신용평가(2025), p. 6.을 바탕으로 저자 재작성

- 미국 관세정책의 극단적인 변화는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무역 질서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투자, 환율 등에 영향을 미쳐 세계 경제 시장의 리스크를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됨
 - 미국은 전 세계 GDP의 약 25%(IMF 기준)를 차지하는 최대 경제 대국이자, 달러 패권 및 연방준비제도(Fed)의 영향력 등으로 글로벌 경제를 주도하고 있음
 - 또한 보호무역주의의 확대는 자국 산업 보호 우선을 위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나아가 국제무역 질서의 위기를 일으킬 수 있음
 - Economist(2025) 등은 미국의 대중국 관세 강화 등에 따라 중국의 저가 생산품이 여타 신흥국으로 향하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급속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였으며, 이에 글로벌 수출 시장에서 우리나라와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우려가 있음²¹³⁾
 - “대공황 이후 최고 관세율”로 불리는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은 무역관계자들에게 예상치 못한 관세 비용 증가로 원자재, 제품 가격을 상승시켜 기업의 수익성을 변화 시킴
 -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전략 수립 및 투자에 불확실성을 심화시키고 세계 경제 성장을 저해하며, 환율 변동성을 심화시켜 추가적인 리스크를 발생시킴
 - World Bank(2025)는 트럼프 행정부가 보편 관세(10%)를 부과하는 경우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전망치(2.7%)보다 0.2%p 하락하고, 상대 국가에서 보복 조치를 할 경우 0.3%p 하락할 것으로 분석함²¹⁴⁾

213) 김기봉·이치훈, 「미국의 대중국 관세(10%) 부과 평가 및 전망」,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5, p. 5.

214) World Bank, *Global Economic Prospects*, January 2025, p. 7.

- 미국의 수입 감소와 글로벌 경제 불안으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도 존재함²¹⁵⁾
- 이에 각국은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의 무역 협정 재조정 등 새로운 경제 전략을 모색해야 하므로 미국과의 무역 흐름과 규모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공급망 전환 등에 따라 제3국과의 교역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
-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은 우리나라 기업의 생산 및 수출입 활동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미국은 우리나라의 2위 교역상대국이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통상 환경 악화는 내수 불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대외무역의존도가 90%에 이르는 한국은 트럼프 1기 시기에도 미국의 무역 규제 강화에 따라 대미 무역수지 흑자 및 대중 수출에 어려움을 겪은 바 있으므로 그보다 강도 높은 트럼프 2기 관세 부과 시 주요 수출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함²¹⁶⁾
 - 또한 주요 대미 수출 물품인 반도체, 자동차 등이 트럼프 관세 2.0의 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면서 수출 부진 및 산업 침체에 따른 투자 축소 등으로 경제성장률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²¹⁷⁾
 -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행정 명령에서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b) 보편 관세 추진 및 (f) 기존 미국이 체결한 무역 협정 검토 및 수정 권고와 관련한 내용임
 - 제4조의 추가 경제 안보 사항과 관련하여 (a)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수입 조정, (b)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규정인 제232조의 관세 면제 및 기타 수입 조정 조치의 효과 검토, (c) 미국 수출통제 시스템 검토 등의 정책도 우리나라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215) 김기봉·이치훈(2025), p. 5.

216) 한국신용평가, 『현실화된 트럼프관세 관세전쟁 (I) -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목표 및 수단, 산업적 영향 점검』, KIS Special Report, 2025.

217) KDI는 2월 11일 트럼프 관세 등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종전 2.0% → 1.6%로 하향 조정함

- 따라서 우리나라는 미국의 관세정책에 대한 동향 및 이슈와 관련하여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한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함

1) 한-미 관계 강화 및 무역 협정 활용

- 미국과의 긴밀한 외교적 관계와 협력을 통해 관세정책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고 양국 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하여야 함
 - 민·관 합동의 선제적이고 실증적인 외교 활동을 강화해야 하고,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함
 - 미국의 관세정책은 단순히 정부의 외교적 대응만으로는 해결이 어렵고 기업의 독자적 대응도 불가능하므로, 정부의 정책 실행력과 민간 기업의 현장 경험에 기반한 민관 협력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함
 - 캐나다, 멕시코, 중국, EU 등 주요국은 미국의 관세 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표명함과 동시에 국경 안보 강화 등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하는 등 유화책도 병행하고 있음²¹⁸⁾
 - 경제사절단 파견 및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한국의 대미 경제 기여, 협력 관계를 강조하는 등 지속적으로 소통해야 함
 - 일본 정부는 미·일 정상회담을 조기에 성사시켰으며, 미국 경제에 대한 자국의 기여를 강조하고 대미 '1조달러' 투자 목표 및 미국산 LNG 수입 확대 등 구체적인 향후 계획을 제시함²¹⁹⁾
 - 우리 정부도 미국의 관심사인 방위산업, 조선업 등의 투자를 연계하는 등 협상의 논리를 마련해야 함²²⁰⁾
 - 미국의 관세 변화에 대한 데이터를 조기에 수집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218) 안남기,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5. pp. 3~5.

219) 이보람,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8권 제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p. 2.

220) 연합뉴스, 「[인터뷰]여한구 '韓, 방산 협력·투자로 美에 철강 관세 면제 설득해야」, 2025. 02. 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008100071?input=1195m>, 검색일자: 2025. 02. 12.

수 있도록 현지 네트워크를 강화해야 함

- 멕시코, 캐나다 등이 미국과의 협의 하에 관세 부과를 유예한 것처럼 우리 정부도 사전 협의를 강화하고 이해관계 조정을 통하여 합의점을 도출해야 함

○ 또한 미국의 관세 및 비관세 정책 외에 보조금 지급 요건 강화 등의 정책 변화에 따른 대미 투자 및 현지화 전략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된 인플레이션 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반도체 및 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한 대규모 보조금 지급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 내 현지 생산 시설을 확대해 왔으므로 장기적으로 국내 산업의 공동화에 따른 투자 및 고용 등을 고려한 산업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²²¹⁾

□ 한-미 FTA 등 기존 무역 협정을 활용하고 필요에 따라 재협상을 통해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트럼프 대통령은 FTA 체결국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입장이므로 한국이 FTA 협정국이라고 하여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임

○ 단, 한-미 FTA 재협상을 통해 일부 품목에 대한 조정은 고려해 볼 수 있음

-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은 “관세는 협상에 활용되는 수단”이라고 언급함²²²⁾

○ 트럼프 1기 행정부와 우리나라는 2018년 한-미 FTA의 일부 내용 개정을 통해 우호적 협력 관계를 지속한 바 있음

- 2018년 당시 우리나라 입장에서의 한-미 FTA 주요 개정은 ① ISDS 소송 남용 방지 및 정부의 정당한 정책 권한 확보 ② 미국의 반덤핑 등 수입 규제 조사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 ③ 섬유제품 원료 일부에 대한 역외 원산지 인정 등이 반영됨²²³⁾

221) 강현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2024-24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p. 7.

222)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관세는 첫째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기 위한 것, 둘째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 셋째 협상에 활용되는 수단으로 세가지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언급함(Reuters. “Treasury Secretary Bessent says tariffs aimed at bringing manufacturing back to US”, February 6, 2025, <https://www.reuters.com/markets/us/treasury-secretary-bessent-say-s-tariffs-aimed-bringing-manufacturing-back-us/>, 검색일자: 2025. 02. 06.)

223) 산업통상자원부,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2018. 03. 26,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260684>, 검색일자: 2025. 02. 04.

- 한편, 한-미 FTA의 원산지 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한 협의안도 마련해야 함
 - 미국이 원산지 기준에 있어 원재료 및 부품의 중국산 비중을 엄격히 검토할 경우 제3국에서 생산하더라도 충족이 어려울 수도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합의가 필요함

2) 수출 시장의 다변화 및 공급망 안정화

-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무역 환경을 재검토하고 특정 국가에 대한 수출입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한 수출입 시장 다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함
 - 원자재 조달, 중간재 생산, 최종재 수출 등 전 과정에 걸친 공급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함
 - 제3국의 현지 파트너십 강화뿐만 아니라 생산기지의 다변화 전략도 필요함
 - 트럼프 1기 당시 다국적 기업들은 대중국 고율 관세를 피하기 위해 중국 외 베트남, 멕시코 등에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중국+1’ 전략을 채택함으로써 관세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었음²²⁴⁾
 - 트럼프 2기의 확대된 관세정책에 다국적 기업들은 다시 한번 중국을 포함한 10개 이상의 생산기지를 확보하는 ‘중국+10’ 전략을 재고하고 있음²²⁵⁾
 - 보편 관세와 같은 불특정 국가의 관세 부과 대응책으로 대미 수출 의존도에 대한 분산도 고려해야 함
 - 한국경제인협회의 수출 전망 조사(2025)에 따르면, 대다수 기업은 ‘수출 부진에 대한 기업 대응 방안’으로 “수출 시장 다변화(47.6%)”라고 답하였음²²⁶⁾

- 수출 시장 리스크는 줄이고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과의 무역 관

224) South China Morning Post, “China+10: how multinationals are revamping their supply chains for Trump 2.0”, February 7, 2025,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97778/china10-how-multinationals-are-revamping-their-supply-chain-s-trump-20>, 검색일자: 2025. 03. 10.

225) 상동

226) 한국경제인협회,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2024. 12. 23.,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950&category=ST, 검색일자: 2025. 02. 04.

계를 강화하여야 함

- 미국의 대중 관세정책 강화에 대비하여 중국산 원재료, 부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인도네시아 등 제3국의 공급망 다각화가 필수적임
 - BRICS 국가들은 서방 경제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협정국 상호 교역을 증진시키고 자국 통화 거래를 확대하고 있으며,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캐나다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 직후 EU와 트럼프 관세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무역·경제협력 강화를 약속함
 - 이에 우리나라도 동남아시아 및 중남미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다변화를 이루어야 하고, 신흥 시장으로의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함
- 국제 무역 기구 및 무역 협정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여 공정한 국제무역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함
- 다자간 무역 협정에 참여하거나 양자 간 협정을 확대함으로써 지역 국가들 간의 무역을 증대시키고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EU는 트럼프 관세의 대응책으로 멕시코, 스위스 등 타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견고히 하고 MERCOSUR(남미공동시장)과 FTA 협정을 체결하는 등 공급망을 확보하는 전략을 시행하였음
 - 영국도 작년 12월 CPTPP(Comprehensive and Progressive Agreement for Trans-Pacific Partnershi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에 가입함으로써 아시아·태평양 국가와의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였음
 -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부터 많은 국가가 미국의 관세에 대해 WTO에 제소하였으나, WTO 상소 기구가 장기간 구성되지 못하고 있는 점, 미국의 WTO 탈퇴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다자 차원에서의 통제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므로 양자 간의 접근이 유효할 것으로 보임²²⁷⁾

227) 정다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이슈와 논점』 제231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p. 2.

3) 혁신을 통한 산업 경쟁력 확보

- 기술 혁신, 친환경 경영 등을 통해 한국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관세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력을 높여야 함
 - 관세 인상 효과를 상쇄하기 위해 생산 공정의 효율화 및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위한 기업 내부의 혁신이 필요함
 - 관세 인상 정책의 기본 취지가 자국 제품의 가격 경쟁력 확보이므로 관세 인상에 따른 가격 경쟁력 약화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R&D 활동을 통해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함²²⁸⁾
 - 또한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는 특정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거나 기존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함
 - 지속적인 혁신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하며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함
 - 한국은행(2024)에 따르면, 혁신은 직접적으로는 신제품 개발과 생산 공정 개선을 통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간접적으로는 기술 진보로 기대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자본투자 확대와 신산업 등장, 글로벌 가치 사슬 재편 등 경제구조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장기 성장에 기여함²²⁹⁾

- 국제적인 협업과 네트워크를 통한 산업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에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미국과 조선, 원자력, AI 등의 산업에서 기술협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공동으로 개척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제시하는 방안도 가능함²³⁰⁾
 -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직후 한국에 ‘조선 협력 러브콜’을 보냈으며,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에 미 해군 군함을 맡길 수 있게 하는 ‘미국 선박법’ 등이 발의되며 조선산업 기반 확대 정책이 가시화되고 있음²³¹⁾

228) 정다연(2025)

229)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년 5월』, 2024. pp. 61~105.

230)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5년 2월』, 2025. pp. 45~52.

- 다른 국가들과의 협업 및 개발 프로젝트 등을 추진함으로써 기술 혁신을 도모할 수 있으며, 이러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할 수 있음
 - 우리나라는 올해 상반기까지(2024.07 ~2025.06) 핵심광물안보 파트너십(Minerals Security Partnership, MSP)²³²⁾의 의장국으로, 양자·다자간 협력을 통한 공급망 확대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으며, 국내 핵심 광물 자원 개발 사업과 연계하여 외교적 지원에 따른 시너지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음²³³⁾

- 이와 같이 트럼프 관세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산업 및 무역에 부담을 가중하였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산업 경쟁력을 재정비하여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으므로 범정부적 지원 대책이 필요함

231) 한경 비즈니스, 「[‘관세 무풍지대’ 진격의 K조선·방산, 천조국 진출 코앞 [트럼프 스톱, 다시 찾아온 기회 ①]」, 2025. 03. 24.,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32115b>, 검색일자: 2025. 03. 24.

232) 청정 경제 및 디지털 경제로의 이행에 필수적인 핵심 광물(구리, 리튬, 니켈, 코발트, 흑연, 희토류 등)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증진을 위해 미국 국무부 주도로 출범한 동맹국·파트너국 간 협력체로 바이든 행정부(2022.06)가 출범하였으며 초대 10개 회원국과 EU에서 현재 총 14개 회원국과 EU로 확장됨(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경제안보 Review』 제24-11호, 2024. pp. 2~8.)

233) 외교부(2024), p. 8.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강구상·김혁중·김종혁·박은빈·민보람, 「미국 트럼프 2.0 행정부의 경제정책 전망과 시사점」, 『오늘의 세계 경제』, 제24-17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 강현주,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교훈 및 2기 행정부에 관한 시사점」, 『자본시장 포커스』, 제2024-24호, 자본시장연구원, 2024.
- 고병창·오길용, 「미·중 무역 전쟁과 한국」, 『지역발전연구』, 제16권 제1호, 2019.
- 김기봉·이치훈, 「미국의 대중국 관세(10%) 부과 평가 및 전망」,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5.
- 김동수·김계환·최정환·정선인, 『미·중 갈등 대응 전략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 연구총서 22-30-01,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23.
- 문병기·강성은·유서경, 「미·중 무역 분쟁의 수출 영향」, 『Trade Focus』, 2019년 24호, 한국무역협회, 2019.
- 박명서, 「미 무역대표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1조 관세 인상 최종안 발표」, 『KITA 통상정보』, 한국무역협회, 2024.
- 박성준, 「미국대선과 중장기 통상기조」, 국가미래전략 Insight 106호, 국회미래연구원, 2024.
- 산업통상자원부, 『2023 외국의 통상환경 -무역장벽 보고서-』, 2023.
- 안남기, 「주요국별 트럼프 관세 대응 점검」, Issue Analysis, 국제금융센터, 2025. pp. 3~5.
- 양지원·허슬비·도원빈·김나을,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TRADE BRIEF』,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25.

- 외교부,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 지난 2년간 성과와 과제」, 『경제 안보 Review』 제24-11호, 2024.
- 원유정·Chirlie Chung·박용주·김미옥(KOTRA 통상지원팀), 「NAFTA 재협상 타결과 영향」, 『Global Market Report』, 18-027, KOTRA, 2018.
- 유지영, 「국가안보 위협 논란에 따른 미국의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 수입 조치에 대한 통상법적 쟁점」, 『통상법률』 제2017-12호, 2017, pp. 9~41.
- 유지윤, 「미 행정부 관세정책의 국내법적 근거와 시사점」, 『KIEP 기초자료』 24-07,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 이보람, 「트럼프 2기 통상정책에 대한 일본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KIEP 세계 경제 포커스』, 제8권 제9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
- 이유진·한아름, 「대선을 앞두고 강화되고 있는 미국의 보호무역조치 내용과 영향」, 『KITA 통상리포트』, Vol. 10, 한국무역협회, 2024.
- 이정민, 「美 신정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 대통령 조치 분석 및 시사점」, 『KOTRA 경제통상리포트』, US25-01, KOTRA, 2025.
- 이정아, 「공화당과 트럼프의 통상 분야 공약 주요 내용과 시사점」, 『통상이슈브리프』, 제2호, 한국무역협회, 2024.
- 정다연,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리스크 점검 및 대응」, 『이슈와 논점』, 제2319호, 국회입법조사처, 2025.
- 조성대, 「2024 미국 선거와 통상환경 전망」, 『KITA 통상리포트』, 제12호, 한국무역협회, 2024.
- 한국무역협회 미주본부, 「2024년 對美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 『워싱턴통상정보』, 제12호, 2025.
- _____, 「2024년 對美 무역 및 주요 수출 품목 동향」, 『워싱턴통상정보』, 제10호, 2025.
- 한국신용평가, 『현실화된 트럼프 2기 관세전쟁 (I) - 트럼프 2기 관세정책의 목표 및 수단, 산업적 영향 점검』, KIS Special Report, 2025.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2024년 5월』, 2024. pp. 61~105.
- _____, 『경제전망보고서 2025년 2월』, 2025. pp. 45~52.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2025년 미국 경제 전망 및 주요 이슈』, 2024.

한아름, 「美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232조 관세조치 강화」, 『KITA 통상이슈브리프』, 한국무역협회, 2020.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외국 문헌〉

CBP, *Tariff Classification*, 2004.

Charlie Savage, Jonathan Swan and Maggie Haberman, “A New Tax on Imports and a Split From China: Trump’s 2025 Trade Agenda”, *New York Times*, 2023

CRS, *Presidential Authority over Trade: Imposing Tariffs and Duties*, 2016.
 ____,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Origins, Evolution, and Use*, CRS Report, 2024.

____, *U.S. Tariff Policy : Overview*, December 19, 2024.

Douglas A. Irwin, *Trade Policy in American Economic History*, *Annual Review of Economic*, 2020.

GPO, *Adjusting Imports of Steel Into the United States*, *Federal Register* Vol. 90, No. 31, President Document, 2025.

Marin Weaver, *Section 232 and 301 Trade Action in 2018*, U.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 2018.

Sutter, Karen M. and Sutherland, Michael D., *China - U.S. Trade Issue*, CRS Report, 2018.

USITC, *U.S. Ad Valorem Equivalent(AVE) Duties & Preference Programs, 1981-2023*, Office of Analysis and Research Services Office of Operations, 2024.

WTO, *Trade Policy Review*, WT/TPR/G/434, 2022.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Reciprocal Trade and Tariffs」

「Tariff Act of 1930」

「Trade Act of 1974」

「Trade Expansion Act of 1962」

「Trading with the Enemy Act 1917」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웹사이트〉

관세법령정보포털, <https://unipass.customs.go.kr/clip/index.do>

기획재정부, <https://www.moef.go.kr/>

산업통상자원부, <https://www.motie.go.kr/>

세계법제정보센터, <https://world.moleg.go.kr/>

한경 경제 용어 사전, <https://dic.hankyung.com/economy/view/?seq=1374>,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K-stat), <https://stat.kita.net/newMain.screen>

The White House, <https://www.whitehouse.gov/>

WTO Trade Remedies Data Portal, <https://trade-remedies.wto.org/en>

USTR, <https://ustr.gov/>

USITC, <https://www.usitc.gov/>

법무법인(유) 세종, 「트럼프 당선과 미국 조세·관세정책의 변화」, 2024. 11. 21.,
<https://www.shinkim.com/kor/media/newsletter/2617>, 검색일자: 2025.
02. 12.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한-미 FTA 개정 협상, 원칙적 합의도출」, 2018. 03. 26,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26068>
4, 검색일자: 2025. 02. 04.

연합뉴스, 「[인터뷰]여한구‘韓, 방산 협력·투자로 美에 철강 관세 면제 설득해야」, 2025.

02. 12., <https://www.yna.co.kr/view/AKR20250212008100071?input=1195m>, 검색일자: 2025. 02. 12.
- _____, 「트럼프 “구리 수입 국가안보 영향 조사하라”… 관세 부과 시사», 2025. 02. 26., <https://www.yna.co.kr/view/AKR20250226006551071?input=1195m>, 검색일자: 2025. 02. 27.
- 한경 비즈니스, 「[‘관세 무풍지대’ 진격의 K조선·방산, 천조국 진출 코앞 [트럼프 스톱, 다시 찾아온 기회①], 2025. 03. 24.,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03232115b>, 검색일자: 2025. 03. 24.
- 한국경제인협회 보도자료, 「2025년 수출 전망 조사», 2024. 12. 23., https://www.fki.or.kr/main/news/statement_detail.do?bbs_id=00035950&category=ST, 검색일자: 2025. 02. 04.
- KOTRA, 「미국 철강 232조 관련 갈등 점입가경», 2018. 06. 30., https://dream.kotra.or.kr/kotranews/cms/news/actionKotraBoardDetail.do?SITE_NO=3&MENU_ID=90&CONTENTS_NO=1&bbsGbn=244&bbsSn=244&pNttSn=167455, 검색일자: 2025. 01. 20.
- AP News, “‘Bear with me,’ Trump says as both farmers and consumers brace for tariff effects”, March 6, 2025, <https://apnews.com/article/trump-tariffs-farms-farmers-mexico-canada-china-prices-3a460f004633c10a6da6c4f97627dd13>, 검색일자: 2025. 03. 18.
- BBC, “Canada imposes 25% tariffs in trade war with US”, February 2,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n4z23kndlyo>, 검색일자: 2025. 02. 03.
- _____, “US China tariffs ‘inconsistent’ with trade rules says WTO”, September 16, 2020, <https://www.bbc.com/news/business-54168419>, 검색일자: 2024. 12. 13.
- _____, “WTO says Trump's US steel tariffs broke global trade rules”, December 10, 2022, <https://www.bbc.com/news/business-63920063>, 검색일자: 2024. 12. 09.

- Bloomberg, “The Products Trump’s Tariff Blitz Could Make More Costly, From Avocados to Cars”, February 2, 2025,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5-02-02/trump-s-new-tariff-blitz-to-hit-avocados-cars-and-bell-peppers>, 검색일자: 2025. 02. 28.
- CBO(Congressional Budget Office), “Effects of Illustrative Policies That Would Increase Tariffs”, December 18, 2024, <https://www.cbo.gov/system/files/2024-12/61112-Tariffs.pdf>, 검색일자: 2025. 02. 05.
- China Briefing, “US-China Relations in the Trump 2.0 Era: A Timeline”, January 21, <https://www.china-briefing.com/news/us-china-relations-in-the-trump-2-0-implications>, 검색일자: 2025. 02. 10.
- CNBC, “Biden targets Shein, Temu with new rules to curb alleged ‘abuse’ of U.S. trade loophole”, September 14, 2024, <https://www.cnbc.com/2024/09/13/de-minimis-shein-temu-biden-china-rules.html>, 검색일자: 2025. 01. 08.
- _____, “Here’s how tariffs on Canada, China and Mexico may impact U.S. consumers”, January 31, 2025, <https://www.cnbc.com/2025/01/31/how-tariffs-on-canada-china-and-mexico-may-impact-us-consumers.html>, 검색일자: 2025. 02. 03.
- _____, “Trump economic advisor Kevin Hassett warns of more uncertainty over tariffs”, March 17, 2025, <https://www.cnbc.com/2025/03/17/trump-hassett-tariff-uncertainty-reciprocal.html>, 검색일자: 2025. 03. 18.
-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What Trump’s Trade War Would Mean, in Nine Charts” , February 5, 2025, <https://www.cfr.org/article/what-trumps-trade-war-would-mean-nine-charts#chapter-title-0-1>, 검색일자: 2025. 02. 28.
- C.P. Bown, “US-China Trade War Tariffs : An Up-to-Date Chart”, PIIE, April 6, 2023,, <https://www.piie.com/research/piie-charts/2019/us-china-trade-war-tariffs-date-chart>, 검색일자: 2025. 01. 13.

CRFB, “Trump’s Latest Tariff Plan Could Raise \$1.5 Trillion”, January 22, 2025, <https://www.crfb.org/blogs/trumps-latest-tariff-plan-could-raise-15-trillion>, 검색일자: 2025. 02. 04.

EU, “Negotiators conclude on modernised Global Agreement with Mexico”, January 17, 2025, https://www.eeas.europa.eu/delegations/mexico/negotiators-conclude-modernised-global-agreement-mexico_en, 검색일자: 2025. 02. 03.

Forbes, “Trump Says Value-Added Taxes Will Be Considered Tariffs: What To Know About His Reciprocal Tariff Plan—And Its Inflation Impact”, February 15, 2025, <https://www.forbes.com/sites/dereksaul/2025/02/15/>, 검색일자: 2025. 02. 18.

Haberkorn, F., Hoang, T., Lewis, G., Mix, C., and Moore, D., “Global trade patterns in the wake of the 2018-2019 U.S.-China tariff hikes”, FEDS Notes,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April 12, 2024, <https://www.federalreserve.gov/econres/notes/feds-notes/global-trade-patterns-in-the-wake-of-the-2018-2019-u-s-china-tariff-hikes-20240412.html>, 검색일자: 2025. 01. 13.

Hayashi Yuka, “Biden Struggles to Push Trade Deals with Allies as Election Approaches”, The Wall Street Journal, December 28, 2023, <https://www.wsj.com/politics/policy/biden-struggles-to-push-trade-deals-with-allies-as-election-approaches-fc512595>, 검색일자: 2025. 01. 13.

Investopedia, “Section 232 of the Trade Expansion Act: What It Is and How It Works”, February 6, 2025, <https://www.investopedia.com/terms/s/section-232-trade-expansion-act.asp>, 검색일자: 2024. 12. 09.

ITA, “U.S. Steel Import Monitor” <https://www.trade.gov/data-visualization/us-steel-import-monitor>, 검색일자: 2025. 02. 11.

NBC NEWS, “Farmers face steep losses in the middle of Trump's trade war

- and funding cuts”, March 14, 2025, <https://www.nbcnews.com/politics/economics/farmers-face-steep-losses-middle-trumps-trade-war-funding-cuts-rcna195967>, 검색일자: 2025. 03. 18.
- Politico, “Trump promises to ‘revolutionize’ auto industry in pitch to Michigan voters,” October 10, 2024, <https://www.politico.com/news/2024/10/10/trump-michigan-00183324>, 검색일자: 2025. 01. 08.
- Reuters, “South Korea to review non-tariff barriers to respond to US reciprocal tariff plan”, February 14, 2025, <https://www.reuters.com/markets/asia/south-korea-review-non-tariff-barriers-respond-us-reciprocal-tariff-plan-2025-02-14/>, 검색일자: 2025. 02. 17.
- _____, “Trump still intends for reciprocal tariffs to kick in on April 2, White House says”, March 19, 2025, <https://www.reuters.com/world/us/countries-can-avoid-trumps-april-tariffs-by-cutting-trade-barriers-bessent-says-2025-03-18/>, 검색일자: 2025. 03. 19.
- _____, “Trump threatens new tariffs in bid to reshape trade”, February 14, 2025,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ays-reciprocal-tariffs-coming-thursday-2025-02-13/>, 검색일자: 2025. 02. 17.
- _____, “Treasury Secretary Bessent says tariffs aimed at bringing manufacturing back to US”, February 6, 2025, <https://www.reuters.com/markets/us/treasury-secretary-bessent-says-tariffs-aimed-bringing-manufacturing-back-us/>, 검색일자: 2025. 02. 06.
- Rubino Rich, “Trump Was Not First To Use The “America First” Slogan”, Huff Post, January 25, 2017, https://www.huffpost.com/entry/the-etymology-of-america-first_b_5889767de4b0628ad613de3f, 검색일자: 2024. 01. 06.
- South China Moring Post, “China+10: how multinationals are revamping their supply chains for Trump 2.0”, February 7, 2025, <https://www.scmp.com/economy/china-economy/article/3297778/china10-how-multinationals->

- are-revamping-their-supply-chains-trump-20, 검색일자: 2025. 03. 10.
- Tax Foundation, “Trump Tariff: Tracking the Economic Impact of the Trump Trade War”, January 31, 2025, <https://taxfoundation.org/research/all/federal/trump-tariffs-trade-war>, 검색일자: 2025. 02. 03.
- The heritage Foundation, “Why the Reciprocal Trade Act’s Tit-for-Tat Tariffs Aren’t a Good Idea”, February 26, 2019, <https://www.heritage.org/trade/commentary/why-the-reciprocal-trade-acts-tit-tat-tariffs-arent-good-idea>, 검색일자: 2024. 11. 14.

관세연구 24-04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 권한 및 관세정책 현황

발행 2024년 12월 31일

저자 홍병진·나지수

발행인 이영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 7. 15. 제2014-24호

조판및 (주)세일포커스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 ISBN 979-11-6655-348-6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